

- 구민이 참여하는 열린행정소통의 도시 • 사람이 중심에 서있는 교육복지도시 • 글로벌시대를 선도하는 창조도시
-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자족도시 • 삶의 품격을 높이는 문화예술도시 • 자연친화 녹색성장을 주도하는 건강도시



연수구보

■ 구정 방향 ■

함께 가꿔요!

행복한 연수!

발행·편집인:연수구청장 / 발행처:인천광역시 연수구 / 주소: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호 (우)406-723 ☎ 749-7403 / FAX 749-7399

구보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부록 제735호 2013. 2. 28.(목)

【조 례】

- 인천광역시연수구조례 제787호(인천광역시연수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 1
- 인천광역시연수구조례 제788호(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 8
- 인천광역시연수구조례 제789호(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 20
- 인천광역시연수구조례 제790호(인천광역시연수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4
- 인천광역시연수구조례 제791호(인천광역시연수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9
- 인천광역시연수구조례 제792호(인천광역시연수구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 ... 36

【규 칙】

- 인천광역시연수구규칙 제514호(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41

○ 인천광역시연수구규칙 제515호(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106

○ 인천광역시연수구규칙 제516호(인천광역시연수구청원경찰장계규칙 일부개정규칙) ... 112

【훈 령】

○ 인천광역시연수구훈령 제242호(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정원규정 일부개정규정)
..... 114

○ 인천광역시연수구훈령 제243호(인천광역시연수구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 130

【예 규】

○ 인천광역시연수구예규 제70호(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징계양정에관한규칙시행지침
폐지지침) 133

【고 시】

○ 인천광역시연수구고시 제2013-12호(송학동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 변경인가
고시) 135

【공 고】

○ 인천광역시연수구공고 제2013-198호(공인 등록 및 폐기 공고) 137

회							
람							

인천광역시연수구조례(공포)

제 명	주 요 내 용
인천광역시연수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	☐ 개정 이유 ○ 지방자치단체 간 편차가 큰 수수료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2012.9.21)됨에 따라, 우리 구 수수료를 전국통일 기준에 맞게 개정하기 위함 ☐ 주요 내용 ○ 법정 수수료 표준요율 준수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법정 수수료 표준요율에 맞지 않는 수수료를 전국통일 기준에 맞게 개정 (별표 1)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연수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고남석

2013. 2. 28.

인천광역시연수구 조례 제787호

인천광역시연수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연수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현금으로”를 삭제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부과된 수수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별표 1]

제 증 명 등 수 수 료(제3조 관련)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가. 공 통				
1.	자치단체의 정보공개방법 및 수수료	(별표2)와	같음	
2.	개인정보 열람 및 정정	1건	200원	
나. 문화체육관련				
1.	면세용도 물품증정	1건	300원	
2.	공연장업 등록(변경등록) 신청	1건	10,000원	
3.	유원시설업 허가·신고			
1)	종합유원시설업 허가	1건	60,000원	
2)	일반유원시설업 허가	1건	30,000원	
3)	기타유원시설업 허가	1건	30,000원	
4.	유원시설업 허가(신고)사항 변경허가(신고)	1건	허가신고시의50	
5.	체육시설업의 신고	1건	30,000원	
6.	체육시설업의 변경신고	1건	10,000원	
7.	체육시설업 등록신청(구경유)			
1)	사업계획 승인신청	1건	50,000원	
2)	사업계획 변경승인신청	1건	20,000원	
3)	등록신청	1건	30,000원	
4)	변경신청	1건	10,000원	
8.	골프장 및 스키장업 등록신청(구경유)			
1)	사업계획 승인신청	1건	100,000원	
2)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	1건	30,000원	
3)	등록신청	1건	50,000원	
4)	변경등록 신청	1건	20,000원	
9.	유통관련업 등록 등(2002. 1. 8 신설)			
1)	유통관련업(비디오물시청제공업, 노래연습장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	1건	25,000원	
2)	유통관련업(일반게임제공업)허가	1건	25,000원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3)	유통관련업(비디오물시청제공업, 노래연습장업, 복합 유통 게임제공업) 등록사항 변경	1건		5,000원			
4)	유통관련업(일반게임제공업)허가사항 변경	1건		20,000원			
5)	유통관련업(복합유통게임제공업)신고	1건		25,000원			
6)	유통관련업(복합유통게임제공업)신고사항변경	1건		20,000원			
7)	유통관련업(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신고	1건		25,000원			
8)	유통관련업(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신고사항 변경	1건		10,000원			
9)	유통관련업(게임제작업·배급업) 등록	1건		25,000원			
10)	유통관련업(게임제작업·배급업) 등록사항변경	1건		20,000원			
11)	유통관련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등록	1건		25,000원			
12)	유통관련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등록사항변경	1건		20,000원			
13)	유통관련업(청소년게임제공업)등록	1건		25,000원			
14)	유통관련업(청소년게임제공업)등록사항변경	1건		20,000원			
10.	유통관련업 신고						
1)	영화업(영화제작업, 영화수입업, 영화배급업, 영화상영업) 신고	1건		20,000원			
2)	영화업(영화제작업, 영화수입업, 영화배급업, 영화상영업) 신고사항 변경	1건		10,000원			
3)	영화업(영화제작업, 영화수입업, 영화배급업, 영화상영업) 신고증 재교부	1건		5,000원			
4)	비디오물(비디오물 제작업, 비디오물 배급업) 신고	1건		20,000원			
5)	비디오물(비디오물 제작업, 비디오물 배급업) 신고사항 변경	1건		10,000원			
다.	회 계 관 련						
1.	납품 또는 공사사실증명	1통		1,000원			
2.	공유재산의 대부(신규) 신청	1건		5,000원			
3.	공유재산의 대부(갱신 또는 기간연장) 신청	1건		3,000원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라. 세 무 관 련							
1.	토지 잠정등급 증명	1건		500원			
2.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 발급	1통		800원			
3.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발급	1통		800원			
4.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발급	1통		800원			
마. 위 생 관 련							
1.	위생처리업 신고	1건		6,000원			
2.	위생처리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1건		3,500원			
3.	위생용품제조업 신고	1건		6,000원			
4.	위생용품제조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1건		3,500원			
5.	장난감제조업 신고	1건		6,000원			
6.	장난감제조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1건		3,500원			
7.	위생용품 품목제조 신고	1건		20,000원			
8.	위생용품 품목제조 신고사항 변경신고	1건		신고시의 50%			
9.	세척제 제조업 신고	1건		20,000원			
10.	세척제 제조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1건		10,000원			
바. 지역경제관련							
1.	어선 원부의 열람 및 등본·초본 발급	1건		800원			
2.	연안어업허가신청	1건		2,500원			
3.	구획어업허가신청	1건		4,500원			
4.	어업허가 유예신청	1건		1,600원			
5.	어업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	1건		1,600원			
6.	어업허가 사항(신청사항)변경신고	1건		1,600원			
7.	수산물 가공업 신고	1건		1,000원			
8.	공장등록 증명	1건		1,000원			
9.	석유판매업 관계						
1)	주유소 등록	1건		20,000원			
2)	용제판매소 등록	1건		20,000원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3) 일반판매소·항공유통판매업·특수판매소 신고	1건		10,000원			
	4) 석유대체연료주유소 등록	1건		50,000원			
	5) 석유대체연료판매소 등록	1건		10,000원			
	10. 어업허가증(어업신고증명서)의 재발급	1건		1,000원			
	11. 낚시 어선업 신고	1건		2,500원			
	12. 어선 건조 및 건조 발주	1건		2,000원			
	13. 어선 개조 및 개조 발주	1건		1,000원			
	14. 어선 건조허가사항 변경허가	1건		2,000원			
	15. 어선 개조허가사항 변경허가	1건		1,000원			
사. 지적건축관련							
	1.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	1건		800원			
	2. 환지예정지 지정 증명원	1건		700원			
	3.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	1건		20,000원			
	4.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법인)	1건		30,000원			
	5.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증 재교부신청	1건		800원			
	6. 부동산 중개사무소 분사무소 설치신고	1건		6,000원			
	7.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발급						
	1) 일반발급의 경우	1필지		1,000원			
	2) 칼라발급의 경우	1필지		1,500원			
아. 보건 관련							
	1. 부속의료기관 개설허가(종합병원 제외)	1건		100,000원			
	2. 의료기관 개설신고	1건		40,000원			
	3.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허가(종합병원 제외)	1건		40,000원			
	4.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 변경신청	1건		20,000원			
	5. 안경업소 개설등록	1건		10,000원			
	6. 안경업소 양도·양수 신고	1건		10,000원			
	7. 치과기공소 인정	1건		10,000원			
	8. 치과기공소 양도·양수 신고	1건		10,000원			
자. 동 관련							
	1. 사실확인(무적자, 독자, 부양가족, 부동산 소유권, 가축가사육, 풍수해 등으로 인한 피해)	1건		1,000원			
	2.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1건		600원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차. 기타 증명							
1. 기타 공부등에 의해 발급하는 제증명		1건		1,000원			
2. 각종 인·허가, 신고필증 재교부		1건		1,000원			
3. 자동차 말소사실 증명서		1통		1,300원			

인천광역시연수구조례(공포)

제 명	주 요 내 용
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 개정 이유 ○ 급속한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모든 구성원이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는 효율적인 조직구성을 위해 조직 개편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 주요 내용 ○ 구 본청 행정기구 신설 및 폐지 - 신 설 : 감사실, 재난방재과 - 폐 지 : 전략사업추진단 ○ 기구 명칭 변경 - 주민생활지원국 ⇒ 복지경제국 - 도시국 ⇒ 도시환경국 - 기획감사실 ⇒ 기획예산실 - 정보통신과 ⇒ 홍보미디어실 - 주민생활지원과 ⇒ 복지정책과 - 건설방재과 ⇒ 건설과 ○ 환경보전과를 도시환경국 소관으로 변경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고남석

2013. 2. 28.

인천광역시연수구 조례 제788호

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자치행정국,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국, 전략사업추진단, 기획감사실”을
“자치행정국, 복지경제국, 도시환경국, 기획예산실, 감사실, 홍보미디어실”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정보통신과,”를 삭제한다.

제5조의 제목 “(주민생활지원국)”을 “(복지경제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을 “복지경제국”으로, “주민생활지원과”를
“복지정책과”로 하며, “환경보전과,”를 삭제한다.

제5조제2항 중 “주민생활국장”을 “복지경제국장”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도시국)”을 “(도시환경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도시국”을 “도시환경국”으로, “건설방재과, 건축과, 도시계획과, 공원
녹지과, 교통행정과, 차량민원과”를 “건설과, 건축과, 도시계획과, 환경

보건과,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차량민원과, 재난방재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도시국장”을 “도시환경국장”으로 한다.

별표1부터 별표3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연수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도시국장”을 “도시환경국장”으로 한다.

제8조제4항 중 “전략사업추진단장”을 삭제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중 “건설방재과장”을 “건설과장”으로 한다.

②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

③ 인천광역시연수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경제국장”으로 하고, “도시국장”을 “도시환경국장”으로 한다.

제32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

④ 인천광역시연수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

⑤ 인천광역시연수구행정법규상담실설치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을 “기획예산실”로 한다.

제5조제1항·제6조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

⑥ 인천광역시연수구규제개혁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

⑦ 인천광역시연수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

⑧ 인천광역시연수구 구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경제국장”으로 하고, “도시국장”을 “도시환경국장”으로 하며,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정보통신과장”을 “홍보미디어실장”으로 한다.

⑨ 인천광역시연수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제3호·제5호·제6호 중 “도시국장”을 “도시환경국장”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4호 중 “건설방재과장”을 “건설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7호 중 “건설방재과”를 “건설과”로 한다.

⑩ 인천광역시연수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중 “도시국장”을 “도시환경국장”으로, “건설방재과장”을 “건설과장”으로 한다.

⑪ 인천광역시연수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도시국장”을 “도시환경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 중 “건설방재과장”을 “건설과장”으로 한다.

⑫ 인천광역시연수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경제국장”으로 한다.

⑬ 인천광역시연수구 행복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1호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경제국장”으로 하고, “도시국장”을 “도시환경국장”으로 한다.

⑭ 인천광역시연수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경제국장”으로 한다.

⑮ 인천광역시연수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경제국장”으로 한다.

⑯ 인천광역시연수구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경제국장”으로 한다.

⑰ 인천광역시연수구청 씨름선수단 설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경제국장”으로 하고, “도시국장”을 “도시환경국장”으로 한다.

⑱ 인천광역시연수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경제국장”으로 한다.

⑲ 인천광역시연수구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경제국장”으로 한다.

⑳ 인천광역시연수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경제국장”으로 한다.

㉑ 인천광역시연수구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경제국장”으로 한다.

㉒ 인천광역시연수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

㉓ 인천광역시연수구 재난관리기금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도시국장”을 “도시환경국장”으로 한다.

②④ 인천광역시연수구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도시국장”을 “도시환경국장”으로 한다.

②⑤ 인천광역시연수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도시국장”을 “도시환경국장”으로 한다.

②⑥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기획주민위원회

가. 기획예산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감사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홍보미디어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복지경제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마. 보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바. 각 동 사무 중 기획주민위원회에 속하는 사항

제5조제3호 나목 중 “도시국”을 “도시환경국”으로 한다.

【별표 1】

사 무 분 장 표 (제4조 관련)

국 명	분 장 사 무
자치행정국	1. 서무, 의전, 보안 및 청사방호에 관한 사항 2. 공무원 인사, 후생복지 및 교육에 관한 사항 3. 특별사법경찰관리 사무에 관한 사항 4. 선거 및 국민투표에 관한 사항 5. 국민운동단체(민간단체)에 관한 사항 6. 직장보육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7. 일제강제동원 피해조사에 관한 사항 8. 과거사 진실규명에 관한 사항 9. 행정구역의 명칭변경 및 구역의 조정에 관한 사항 10. 공무원 및 상용노조 지원 등에 관한 사항 11. 주민자치센터운영에 관한 사항 12.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13. 평생학습도시에 관한 사항 14. 교육경비지원에 관한 사항 15. 교육국제화특구 사업에 관한 사항 16. 문화예술진흥 및 관광 진흥에 관한 사항 17. 생활체육에 관한 사항 18. 여가레저활동에 관한 사항 19. 구비, 시비, 국비회계의 총괄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0. 계약심사업무에 관한 사항 21. 복식부기에 관한 사항 22. 물품(차량포함) 조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3. 국·공유재산 취득·처분·관리에 관한 사항 24. 지방세 목표액 책정 및 전망분석에 관한 사항 25. 지방세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 26. 구 금고 계약에 관한 사항 27. 지방세 제도의 운영 및 세원개발에 관한 사항

국 명	분 장 사 무
자치행정국	28. 지방세의 수입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9. 세외수입 및 세무조사에 관한 사항 30. 개별주택 가격조사에 관한 사항 31. 기부금품 모집통제에 관한 사항 32. 문서 및 공인관리에 관한 사항 33. 기록물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34. 정보공개 신청서류 접수 통제에 관한 사항 35. 행정간행물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6. 행정자료실 운영에 관한 사항 37.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 38. 주민등록 및 주민전산화 · 외국인등록에 관한 사항 39.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사항 40. 여권발급 업무 등에 관한 사항 41. 토지관리 및 지적에 관한 사항 42. 도로명주소에 관한 사항 43. 부동산중개업에 관한 사항 44. 그밖에 다른 국 · 실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별표 2】

사 무 분 장 표 (제5조 관련)

국 명	분 장 사 무
복지경제국	1.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종합계획 수립·서비스 제공·조정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평가 및 협의체 구성에 관한 사항 3. 사회복지행정종합계획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4.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법인에 관한 사항 5. 호국보훈에 관한 사항 6. 보건 및 복지서비스 연계업무에 관한 사항 7. 희망복지 129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8. 저소득주민 기초생활보장에 관한 사항 9. 긴급복지지원에 사업에 관한 사항 10. 의료급여에 관한 사항 11. 장애인복지에 관한 사항 12. 노인복지 전반에 관한 사항 13. 외국인묘지(매장, 개장, 유실 등) 처리에 관한 사항 14. 자활지원 전반에 관한 사항 15. 여성복지 및 여성단체 지도 육성에 관한 사항 16.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 17. 보육 업무에 관한 사항 18.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 19. 청소년보호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20. 드림스타트 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신규 추가) 21. 물가안정·소비자보호 및 산업진흥에 관한 사항 22.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사항 23. 연료수급 및 유류·가스에 관한 사항 24. 농·축·수산 및 양정 유통에 관한 사항 25. 지역단위 경제발전에 관한 사항 26. 노사지원 및 실업대책업무에 관한 사항

국 명	분 장 사 무
복지경제국	27. 경영수익 및 민간공동출자 사업에 관한 사항 28. 직업안정에 관한 사항 29. 일자리 창출 전반에 관한 사항 30. 사회적기업 전반에 관한 사항 31. 마을기업육성에 관한 사항 32. 폐기물에 관한 사항 33. 자원재활용에 관한 사항 34. 국토대청결운동에 관한 사항 35. 공중및 식품위생영업 신고 및 지도 관리에 관한 사항 36.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에 관한 사항 37. 식중독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8. 부정불량식품 등 유통식품 관리에 관한 사항 39. 기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분야와 유사하거나 연관된 사항

【별표 3】

사 무 분 장 표 (제6조 관련)

국 명	분 장 사 무
도시환경국	1. 건설행정의 종합계획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2. 지방토목·건설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3. 도로(도로폭20M이하) 및 도로부속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 하수정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하천 및 공유수면 관리에 관한 사항 6.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에 관한 사항 7. 무허가건축물 단속에 관한 사항 8. 건축물관리대장 관리 및 전산화 발급 업무 9. 건축행정정책 정보화 업무 10. 가설건축물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 11. 공동주택 재개발 및 재건축에 관한 사항 12. 공동주택 사업계획승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3.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관한 사항 14. 광고물업무에 관한 사항 15. 도시경관업무에 관한 사항 16. 도시계획사업에 관한 사항 17.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18.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사항 19. 환경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0. 자연보호활동에 관한 사항 21.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2. 먹는 물 공동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23. 저탄소녹색성장 및 녹색생활실천에 관한 사항 24. 기후변화대응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5. 연수의제21실천협의회 추진에 관한 사항

국 명	분 장 사 무
도시환경국	26. 산림자원 보전 및 휴양기능 증대 전반에 관한 사항 27. 녹지조경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28. 도시공원 및 녹지조성 전반에 관한 사항 29.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30. 교통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1. 주차시설 확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2. 교통환경개선 사업에 관한 사항 33.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사항 34.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35. 불법 주·정차 단속에 관한 사항 36. 화물 및 여객자동차에 관한 사항 37. 무단방치차량에 관한 사항 38. 자동차관리사업에 관한 사항 39. 자동차등록에 관한 사항 40. 의무보험 미가입자 가입 촉구 등에 관한 사항 41. 재난 및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42. 재난 피해원인 및 피해상황 조사·분석 등에 관한 사항 43. 민간자율 방재기능 강화 및 민간협력지원 등에 관한 사항 44. 정보통신망(유선, 무선, 센서망 등)고도화에 관한 사항 45. 행정정보통신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6. Smart 연수 건설(u-City 건설 등)에 관한 사항 47. u-도시통합운영센터 건설에 관한 사항 48.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9. 민방위 및 비상대비업무에 관한 사항 50. 기타 도시국 소관분야와 유사하거나 연관된 사무

인천광역시연수구조례(공포)

제 명	주 요 내 용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 이유 ○ 2013년도 총액인건비 산정 결과에 따른 증원 인력 및 자치단체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확충 시행지침에 의거 사회복지직렬 공무원의 정원을 증원하고, ○ 급속한 행정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창의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조직개편을 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주요 내용 ○ 정원의 총수 변경 : 619명 ➡ 641명(증 22명) ○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일부변경 [별표 3] <table><tr><th rowspan="2">직 급</th><th colspan="3">정 원</th></tr><tr><th>현정원</th><th>조정정원</th><th>증감</th></tr><tr><td>총정원</td><td>619</td><td>641</td><td>22</td></tr><tr><td>구청장</td><td>1</td><td>1</td><td>-</td></tr><tr><td>일반직계</td><td>574</td><td>596</td><td>22</td></tr><tr><td>4급이상</td><td>5</td><td>5</td><td>-</td></tr><tr><td>5급</td><td>44</td><td>45</td><td>1</td></tr><tr><td>6급이하</td><td>525</td><td>546</td><td>21</td></tr><tr><td>기능직계</td><td>44</td><td>44</td><td>-</td></tr></table>	직 급	정 원			현정원	조정정원	증감	총정원	619	641	22	구청장	1	1	-	일반직계	574	596	22	4급이상	5	5	-	5급	44	45	1	6급이하	525	546	21	기능직계	44	44	-
직 급	정 원																																			
	현정원	조정정원	증감																																	
총정원	619	641	22																																	
구청장	1	1	-																																	
일반직계	574	596	22																																	
4급이상	5	5	-																																	
5급	44	45	1																																	
6급이하	525	546	21																																	
기능직계	44	44	-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고남석

2013. 2. 28.

인천광역시연수구 조례 제789호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 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641명으로 하며, 집행기관과 의회사무기구에 두는 정원은 다음과 같다.

1. 집 행 기 관 : 624명
2. 의회사무기구 : 17명

별표2 및 별표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채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

구분	4급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비율	1%이내	8%이내	23%이내	32%이내	30%이내	6%이상

2. 기능직공무원

구분	6급	7급	8급	9급·10급
비율	12%이내	43%이내	40%이내	5%이상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 · 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기관별	총계	집 행 기 관					의회사무 기 구
		소계	본청	직속기관 (보건소)	사업소 (도서관)	동	
총계	641	624					17
정무직계	1	1	1				
구청장	1	1	1				
일반직계	596	581					15
3급	1	1	1				
4급	4	4	3	1			
5급	45	42	24	5	1	12	3
6급이하	546	534					12
기능직계	44	42					2
6급이하	44	42					2

인천광역시연수구조례(공포)

제 명	주 요 내 용
인천광역시연수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정 이유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2011.09.16일 제정되어 2012.03.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제8항에서 규정한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조직·구성과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주요 내용 ○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제2조~제3조) ○ 위원의 임기·해촉·기피 및 용역·공사의 금지 (제4조~제6조) ○ 연수구지적재조사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등 (제7조) ○ 연수구지적재조사위원회 간사, 회의 (제8조~제9조) ○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 (제10조)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연수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고남석

2013. 2. 28.

인천광역시연수구 조례 제790호

인천광역시연수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인천광역시연수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인천광역시연수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인천광역시연수구(이하 “구”라 한다) 지적재조사 관련 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동장 (단, 해당 사업지구에 관한 안건의 경우에 위원으로 임명한다)
3.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4.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제3조제3항 각 호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6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6조(위원의 기피 및 용역·공사의 금지) 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관하여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내의 분쟁 또는 이해관계가 직접적으로 있는 경우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② 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④ 위원은 직무와 직접 관련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의 지적재조사측량 및

일필지조사 대행업무와 관련된 용역·공사 등에 수의계약에 의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수행하는 지적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견청취) ① 위원회는 안건 심의와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하거나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청취를 할 대상자가 관련 전문가인 경우에는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인 경우에는 법 제13조에 의한 토지소유자협의회의 장이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사업지구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임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간사에게 해당 안전에 대한 조사 및 검토를 지시할 수 있고, 간사는 조사·검토한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 및 조사·검토 결과를 심의 또는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적재조사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중 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연수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회의록 작성) 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의결사항
6. 그 밖에 중요사항

② 간사는 회의록 작성 후 회의에 참석한 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연수구조례(공포)

제 명	주 요 내 용
인천광역시연수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정 이유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2011.09.16일 제정되어 2012.03.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1조 제11항에서 규정한 경계결정위원회의 조직·구성과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주요 내용 ○ 경계결정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제2조~제3조) ○ 위원의 임기·해촉·제척 및 기피 (제4조~제6조) ○ 경계결정위원회 위원장 직무, 간사 등 (제7조~제9조) ○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 (제10조) ○ 이의신청의 거부 및 중지 (제11조)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연수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고남석

2013. 2. 28.

인천광역시연수구 조례 제791호

인천광역시연수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1조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인천광역시연수구 경계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인천광역시연수구 경계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1항에 규정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인 판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인천광역시연수구(이하 “구”라 한다) 지적재조사 관련 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이 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위원은 해당 사업지구에 관한 안건인 경우에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다.

1. 관할 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

가.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나. 변호사, 법학교수, 그 밖에 법률지식이 풍부한 사람

다. 지적측량기술자, 감정평가사,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

3. 각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동장

④ 위원에는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제3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6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6조(위원의 제척 및 기피) ① 제3조제3항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관하여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내의 분쟁 또는 이해관계가 직접적으로 있는 경우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

원으로 재직한 경우

- ② 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 ④ 제3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제5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위원회 회의에서 제척할 수 없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수행하는 지적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
-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위원장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요약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 ④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지적소관청으로부터 회부 받은 지적확정조서에 대한 결정은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때, 최대 60일을 초과한 안건이 위원회에서 결정되지 아니하거나 못하는 경우는 자동 폐기되는 것으로 보며 지적소관청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경계결정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의결도 이와 같다.
- ⑤ 위원회의 결정 또는 의결은 문서로써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⑥ 위원회의 의결과정에서 경계나 면적이 조정이나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필지만을 별도로 표기하여, 위원회 회의개최 없이 서면 심사하는 방법으로 문서로써 각 위원에게 서명을 받아 따로 의결한다.
- ⑦ 제5항에 따른 결정서 또는 의결서에는 주문, 결정 또는 의결 이유, 결정 또는 의결 일자 및 결정 또는 의결에 참여한 위원의 성명을 기재하고, 결정 또는 의결에 참여한 위원 전원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서명날인을 거부하거나 서명날인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위원의 경우 해당 위원의 서명날인을 생략하고 그 사유만을 기재 할 수 있다.
- ⑧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견청취) ①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②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문서로 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이를 취합·정리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방법에 의하여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제출한 의견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④ 위원회의 경계결정의 기준은 법 제14조에 따르되, 위원회는 경계결정을 하기에 앞서 토지소유자들로 하여금 경계에 관한 합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⑤ 위원회는 직권 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사실조사를

하거나 신청인 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서류를 지적소관청에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지적소관청의 소속 공무원은 이에 대한 사실조사를 하고 이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이의신청의 거부 및 중지) 본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경계결정의 이의 신청에 대하여,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 또는 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거부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경계분쟁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에서 규정한 지적재조사 측량성과의 연결교차 이내인 경우
2. 사실상 동일한 내용의 이의신청을 중복적으로 신청한 경우
3.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허가·조정 등을 이유로 경계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중 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연수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회의록 작성) 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의결사항
6. 그 밖에 중요사항

② 간사는 회의록 작성 후 회의에 참석한 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연수구조례(공포)

제 명	주 요 내 용
인천광역시연수구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	☐ 제정 이유 ○ 2012.08.17일자로 「작은도서관 진흥법」이 시행됨에 따라, 주민들의 지식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친화적 도서관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연수구 작은도서관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 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 및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조~제4조) ○ 작은도서관 설치 요건 및 등록 및 취소에 관한 사항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제5조~제7조) ○ 작은도서관 지원에 대한 근거를 규정함 (제8조) ○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제9조) ○ 민간 후원활동 및 평가·포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제11조~제12조)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연수구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고남석

2013. 2. 28.

인천광역시연수구 조례 제792호

인천광역시연수구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3조에 따라 주민들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거리에서 책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지식정보의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친화적 도서관 문화가 향상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작은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라 공중의 생활권역에서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 서비스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 중 공공도서관 시설 및 도서관자료기준에 미달하는 도서관으로서 공립 작은도서관과 「도서관법」 제31조에 따라 등록된 사립작은도서관을 말한다.

제3조(기능)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료 및 정보의 수집·정리·분석·보존·제공·열람·대출
2. 지역 문화진흥기관으로서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3.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서비스 제공을 위한 행사 및 교육
4.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공동체 문화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5. 어린이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
6. 그 밖에 지역주민들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활동 등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들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간 자료의 공동이용 등 관내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하여 상호협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설치요건 등) ① 작은도서관은 「도서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1,000권 이상의 장서(시청각자료 또는 전자자료 등을 제외한 순수 도서자료) 구비
2. 6석 이상의 열람석 구비
3. 최소 연면적 33제곱미터(전용면적) 이상의 규모

② 작은도서관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장서 구비 시 어린이와 동반 가족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계층을 고려하여 장서를 갖추어야 한다.

제6조(등록 및 취소) ①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제5조제1항의 설치 기준 등 요건을 갖추고, 구청장에게 등록 신고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매년 관내에 등록된 작은도서관 운영 전반에 대하여 심사할 수 있으며, 심사결과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제7조(작은도서관 개관 및 휴관) ① 작은도서관의 개관시간은 1일 4시간 이상으로 한다. 다만, 지역적·계절적 특성 등을 반영하여 개관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② 작은도서관의 휴관일은 매주 1회 정기휴관일로 하되, 자체 실정에 맞도록

휴관할 수 있다.

제8조(작은도서관 지원) ① 구청장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자료구입, 시설환경 개선, 프로그램 운영, 그 밖에 작은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작은도서관에 대한 보조금 교부 등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연수구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9조(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작은도서관 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연수구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작은도서관 활성화 정책 심의
2. 보조금 신청 사업에 대한 심의
3. 그 밖에 작은도서관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등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인천광역시연수구 공공도서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도서관 운영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제10조(교육) 구청장은 작은도서관 운영인력(자원봉사자를 포함한다)의 전문적 업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민간 후원활동의 장려) 구청장은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 및 민간의 후원 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제12조(평가 및 포상) ① 구청장은 작은도서관의 육성 및 합리적인 지원을 위하여 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

- ② 구청장은 작은도서관의 진흥에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되는 자를 선정하여 「인천광역시연수구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연수규칙(공포)

제 명	주 요 내 용
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	☐ 개정 이유 ○ 급속한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모든 구성원이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는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조직 개편함에 따라 관련 규칙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 내용 ○ 기구신설 및 부서 명칭 변경 - 신 설 : 감사실, 재난방재과 - 명칭변경 · 주민생활지원국 ⇒ 복지경제국 · 도시국 ⇒ 도시환경국 · 기획감사실 ⇒ 기획예산실 · 정보통신과 ⇒ 홍보미디어실 · 주민생활지원과 ⇒ 복지정책과 · 건설방재과 ⇒ 건설과 - 이 관 : 주민생활지원국 (환경보전과) ⇒ (도시환경국)으로 이관 ○ 사무분장표(별표1, 2, 3, 4) 일부내용 수정

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고남석

2013. 2. 28.

인천광역시연수구 규칙 제514호

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부터 제4조까지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기획예산실) 기획예산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4조(감사실) 감사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 지방계약직공무원 중 지방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4조의2(홍보미디어실) 홍보미디어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자치행정국) 자치행정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총무과장, 교육지원과장, 문화체육과장, 재무회계과장, 세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민원지적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제6조의 제목 “(주민생활지원국)” 을 “(복지경제국)” 으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주민생활지원국장” 을 “복지경제국장” 으로, “주민생활지원과장” 을 “복지정책과장” 으로 하며, “청소행정과장, 환경보전과장은” 을 “청소행정과장은” 으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도시환경국) 도시환경국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건설과장, 건축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도시계획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환경보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공원녹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교통행정과장, 차량민원과장, 재난방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별표1부터 별표4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연수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전략사업추진단, 기획감사실” 을 “기획예산실” 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중 “주민생활지원과” 를 “복지정책과” 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4호 중 “도시국” 을 “도시환경국” 으로 한다.

② 인천광역시연수구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기획감사실” 을 “기획예산실” 로 한다.

③ 인천광역시연수구 사무전결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 을 각각 “기획예산실장” 으로 한다.

④ 인천광역시연수구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 을 “기획예산실장” 으로 한다.

⑤ 인천광역시연수구 소송사무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5조제1항, 제9조제3항, 제10조제2항, 제15조제1항, 제25조제1항 중 “기획감사실장” 을 각각 “기획예산실장” 으로 한다.

⑥ 인천광역시연수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항·제3항,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제2항·제3항·제4항, 제9조, 제10조제1항·제2항, 제11조제1항·제2항, 제12조제1항·제2항, 제16조제1항, 제18조제1항·제3항·제4항, 제25조제1항·제2항·제3항·제4항, 제26조, 제27조제1항·제2항, 제28조제1항·제2항, 제30조제1항·제2항, 제31조, 제32조 본문 및 제6호, 제33조제1항·제2항·제3항, 제34조 중 “기획감사실장” 을 각각 “기획예산실장” 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 을 “복지경제국장” 으로 하고, “도시국장” 을 “도시환경국장” 으로 한다.

⑦ 인천광역시연수구 자체감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9조제1항 중 “기획감사실장” 을 각각 “감사실장” 으로 한다.

⑧ 인천광역시연수구 업무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 을 “감사실장” 으로 한다.

⑨ 인천광역시연수구 모범공무원포상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 을 “복지경제국장” 으로, “도시국장” 을 “도시환경국장” 으로, “기획감사실장” 을 “기획예산실장” 으로 한다.

⑩ 인천광역시연수구 재무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제8조,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제2항, 제11조제1항·제2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제2항·제3항, 제14조, 제15조제1항·제3항, 제16조, 제17조, 제18조제1항·제2항·제3항, 제19조제1항·제2항·제3항·제4항, 제20조제1항, 제22조제3항, 제25조제1항·제2항·제3항, 제26조, 제27조제1항·제2항, 제28조제1항·제2항, 제29조제1항·제2항, 제47조제1항·제2항, 제68조제2항, 제69조의1제1항·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 을 각각 “기획예산실장” 으로 한다.

⑪ 인천광역시연수구 민원1회방문처리제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 을 각각 “복지경제국장” 으로 하고, 제4조제3항 중 “도시국장” 을 “도시환경국장” 으로, “기획감사실장” 을 “기획예산실장” 으로 한다.

⑫ 인천광역시연수구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도시국장”을 “도시환경국장”으로 한다.

제4조제3항제1호 및 제6조제2항 중 “건설방재과장”을 각각 “건설과장”으로 한다.

⑬ 인천광역시연수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경제국장”으로 하고, “도시국장”을 “도시환경국장”으로 한다.

⑭ 인천광역시연수구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경제국장”으로 한다.

⑮ 인천광역시연수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제3호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경제국장”으로 한다.

⑯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인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도시국장”을 “도시환경국장”으로 한다.

⑰ 인천광역시연수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제3호·제5호 중 “도시국장”을 “도시환경국장”으로 한다.

【별표 1】

구 본청 부서 사무분장표 (제9조 관련)

부서명	분 장 사 무
기획예산실	1. 기구 및 정원관리에 관한 사항 2. 사무위임 및 사무전결에 관한 사항 3. 민간위탁사무에 관한 사항 4. 구 행정의 종합기획 조정에 관한 사항 5. 지시사항 관리 6. 위원회 관리 7. 구정백서 및 구정현황 발간에 관한 사항 8.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9. 구정의 중·장기종합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10. 당정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11. 시 확대간부 회의 12. 구청장직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 13. 공무원 공무국외 여행 허가에 관한 사항 14. 국내·외 회의(대회)유치에 관한 사항 15.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및 행정협정체결에 관한 사항 16. 국내·외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17. 지방분권·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18. 지방이양 사무에 관한 사항 19. 일반회계·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배정에 관한 사항 20. 국고 및 시비 보조금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1. 세출예산의 변경(전용, 이체, 이용, 변경 등) 사용에 관한 사항 22. 성립전 예산 및 예비비 사용승인에 관한 사항 23. 예산의(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에 관한 사항 24. 교부세, 교부금 및 재원조정교부금 관리에 관한 사항 25. 예산성과금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부서명	분 장 사 무
기획예산실	26. 중기 지방재정 계획 수립 27. 지방재정 투·융자심사에 관한 사항 28. 재정전망 분석 및 제도 연구 발전 29. 지방채무의 발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0. 기금 운영 총괄 조정·관리 31. 주민재정 참여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32.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관리에 관한 사항 33. 용역업무 관리에 관한 사항 34. 예산절감 대책 및 건전화 계획 이행에 관한 사항 35. 재정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36. 예산낭비 대응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37. 지방공기업 등에 관한 사항 38. 구 법제 행정의 종합기획에 관한 사항 39. 구 의회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40. 규제개혁업무에 관한 사항 41. 조례, 규칙, 훈령, 예규의 제 개정, 폐지, 공포에 관한 사항 42. 고시, 공고 등 중요문서의 심사에 관한 사항 43. 법제 자료의 조사, 수집, 연구에 관한 사항 44. 법령 및 자치법규 질의, 해석에 관한 사항 45. 행정법규 상담실 운영에 관한 사항 46. 조례규칙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47. 구청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48. 소송사건 처리 결과의 심사 및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49. 소송대리인 선임 및 소송수행자 지정에 관한 사항 50. 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사항 51. 행정심판에 관한 사항 52. 정책 및 전략 개발에 관한 사항 53. 경영수익사업 발굴 및 우수사례 전파에 관한 사항 54. 인천 신항 관련사업 및 배후지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부서명	분 장 사 무
감 사 실	1. 감사에 관한 종합계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감사 및 그 결과 조치에 관한 사항 3. 비위공무원 징계요구 및 소청에 관한 사항 4. 청원진정서 처리에 관한 사항 5. 상급기관 이첩사항 조사처리에 관한 사항 6. 사무인계인수사항 확인에 관한 사항 7. 민원서류 처리 점검에 관한 사항 8. 감사사항의 기록관리에 관한 사항 9. 공직기강 쇄신 추진에 관한 사항 10. 공직자윤리위원회에 관한 사항 11. 클린신고센터 운영 12.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 13. 공직자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 14. 중요정보 및 민원사항 조사처리에 관한 사항 15. 청렴도 관련 업무 16. 청탁등록 센터 운영 17. 구 본청, 산하기관, 단체의 주요업무에 대한 확인평가 및 결과조치 18. 자체평가에 관한 사항 19. 국정시책 연계 군·구 평가 총괄 관리 20. 주요 대형 프로젝트 점검확인 및 구민불편사항 확인 평가 21. 외부기관 평가에 관한 사항(총괄적인 업무) 22. 7대 당면사항

부서명	분 장 사 무
홍보미디어실	1. 홍보기획, 보도, 미디어활동, 통신지원에 관한 사항 2. 구정·시책 보도지원에 관한 사항 3. 구정 여론조사에 관한 사항 4. 한국지역진흥재단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5. 대언론 구청장 인터뷰 및 홍보에 관한 부서요구사항 검토 6. 각종 홍보물 제작 및 보존 관리, 배부 7. 구정 홍보물(화보·소식지·영상물·뉴스 제작 등) 발행 배부 8. 홍보·미디어 메커니즘 및 시스템에 관한 사항 9. 구의 상징(CI, BI) 제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공고 및 고시, 시정 홍보용 게시판 관리 11. 신문 및 방송 보도와 관련한 홍보에 관한 사항 12. 국·시정 및 구정 홍보에 관한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13. 스튜디오, 인터넷방송실, 구정홍보실, VTR실, 사진실, 기자실 운영 14. 인터넷 구정홍보계획의 총괄 15. 구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6. 인터넷 홈페이지 홍보사항 유지·관리 17.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 운영에 관한사항 18. 지역정보화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19. 행정정보화사업 추진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0. 행정정보시스템(새울행정시스템, 전자결재시스템 등) 운영에 관한 사항 21. 전산장비(PC, 프린터, 스캐너 등) 도입 및 유지보수 지원에 관한 사항 22. 주전산기(공통기반서버, KLIS서버 등) 및 각종서버 운영에 관한 사항 23. 구내 정보통신망(LAN, WAN구간) 회선 관리에 관한 사항 24. 네트워크장비(백본, 라우터 등)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5. 정보통신보안 및 개인정보보안에 관한 사항 26. 정보보호시스템(VPN, F/W, IPS, 유해차단 등) 구축 및 운영관리 27. U-컨텐츠 서비스 모델 개발 및 운영 28. 무선인터넷(Wifi)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부서명	분 장 사 무
홍보미디어실	29. 정품 SW 및 우수정보시스템 보급 및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30. 구민 및 공무원 정보화 교육에 관한 사항 31. 통계행정의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32. 통계자료의 간행물 발간에 관한 사항 33. 각종 통계조사(인구주택, 농림어업, 사업체 등)에 관한 사항

부서명	분 장 사 무
총 무 과	1. 의식행사, 의전에 관한 사항 2. 구민의 날 지원 및 구민상 포상에 관한 사항 3. 당직, 직원복무 및 청사방호(청원경찰 운영 등)에 관한 사항 4.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5. 공무원 보수에 관한 사항 6. 직원복지회 운영에 관한 사항 7. 자녀보육료 지원에 관한 사항 8. 직장보육시설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9. 구내식당 운영에 관한 사항 10. 직원 휴양시설(콘도) 운영에 관한 사항 11. 구 본청 책이랑 운영에 관한 사항 12. 상황실 운영에 관한 사항 13. 국경일 등 태극기 관리에 관한 사항 14. 직장 동호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5. 거주외국인 지원 업무 16. 직장 민방위 및 자체 예비군 운영 · 관리에 관한 사항 17.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8. 직원 및 간부공무원 비상연락(소집)에 관한 사항 19. 공무원노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0. 상용직노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1. 인사제도의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2. 소속 공무원의 인사,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23. 공무원 임용에 관한 사항 24. 청원경찰 임용에 관한 사항 25. 신원조사 의뢰에 관한 사항 26. 특별사법경찰관리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27.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의 현원관리에 관한 사항 28.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훈련성적평정 및 가점평정에 관한 사항

부서명	분 장 사 무
총 무 과	29. 공무원 교육에 관한 사항(공무원 시책교육 포함) 30. 공무원 임용시험 요구, 특별임용 및 전직시험 관련 사항 31. 공무원증 발급, 재직·경력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항 32. 공무원 건강진단 및 4대 보험 업무에 관한 사항 33. 공무원 비밀취급 인가에 관한 사항 34. 공무원연금에 관한 사항 35. 공무원표창에 관한 사항 36. 성과연봉 및 성과상여금 지급에 관한 사항 37.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 관한 사항 38. 선거 및 국민투표에 관한 사항 39. 사회단체 등 활성화에 관한 사항 40. 그 밖에 다른 과에 속하지 않는 사회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41. 사회단체지원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조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2. 구 행정실적 평가 관리에 관한 사항 43. 민간인 표창에 관한 사항 44. 새마을 운동조직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 45. 새마을 금고 육성에 관한 사항 46. 시장 및 구청장 초도방문에 관한 사항 47. 여론 및 동향과악에 관한 사항 48. 창안 및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49. 주요시책 및 당면사항 추진에 관한 사항 50. 명절연휴 종합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 51. 북한이탈주민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 52. 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부서명	분 장 사 무
총 무 과	53. 행정서비스현장 운영에 관한 사항 54.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조사에 관한 사항 55. 과거사 진실규명에 관한 사항 56. 행정구역의 위치·명칭 및 구역조정에 관한 사항 57. 동 주민센터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58.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59.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60. 반상회 운영지도에 관한 사항 61. 통·반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 62. 적십자회비 모금에 관한 사항 63.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64. 행복마을만들기 지원에 관한 사항 65. 인권보장 및 증진관련 지원에 관한 사항 66. 그 밖에 자치행정국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부서명	분 장 사 무
교육지원과	1. 교육정책에 관한 사항 2. 학교·지역사회 연계 교육프로그램 개발 운영 3. 지역교육사업을 위한 학교 및 교육청 업무 지원 4. 지역우수자 전형 지원에 관한 사항 5. 취학사무에 관한 사항 6. 각급 학교 표창 지원에 관한 사항 7.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및 정산에 관한 사항 8.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9. 영어체험교실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10. 교육복지우선지역 학교 지원에 관한 사항 11. 교육국제화특구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12. 학교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 13.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사항 14.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15. 평생교육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16. 평생교육기관(시설)과의 프로그램운영 및 연계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17.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에 관한 사항 18. 평생학습도시 활성화 추진에 관한 사항 19. 평생학습관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20. 평생교육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21. 그 밖에 평생학습도시 발전과 관련한 사항

부서명	분 장 사 무
문화체육과	1. 문화예술 전반에 관한 사항 2. 지방문화 예술단체 운영에 관한 사항 3. 구립예술단 운영에 관한 사항 4. 지명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5. 연수금요예술무대 운영에 관한 사항 6. 연수구 문화예술진흥기금설치·운용에 관한 사항 7. 연수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사항 8. 문화공원의 야외무대 운영에 관한사항 9. 관광행정의 종합기획 조정에 관한 사항 10. 국내·외 여행업에 관한 제등록 및 신고 등에 관한 사항 11. 관광편의시설업 제등록 및 신고 등에 관한 사항 12. 관광숙박업 관리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사업취소 제외) 13.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변경 승인에 관한 사항 14. 종합휴양업 변경등록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사업취소 제외) 15. 공연장 등록 및 공연에 관한 사항 16. 지방문화원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17. 영화관 등록 및 상영에 관한 사항 18. 출판사 및 인쇄등록에 관한 사항 19. 직장운동경기부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20.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상 체육시설업의 등록신고 등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21. 용담공원 내 씨름장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22. 스포츠바우처 사업 일반에 대한 사항 23. 생활체육 진흥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부서명	분 장 사 무
문화체육과	24.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업의 신고 등록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업의 허가·등록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령에 의한 영업의 신고·등록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7. 문화재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8. 복합문화시설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부서명	분 장 사 무
재무회계과	1. 회계문서 심사 및 구 사업소 동 회계문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2. 세출예산의 정리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회계관리 법규의 정비에 관한 사항 4. 원천징수금 징수 불입에 관한 사항 5. 세입세출외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보관에 관한 사항 6. 부가가치세 불입 및 세금계산서 처리에 관한 사항 7. 국비, 시비 정리에 관한 사항 8. 회계관계 직인 보관에 관한 사항 9. 회계관계 증빙서류 보관에 관한 사항 10. 구금고의 세출분야 감독에 관한 사항 11. 공사·용역·물품 등 계약에 관한 사항 12. 급여압류자 관리에 관한 사항 13. 복식부기에 관한 사항 14. 물품구매·제조, 용역사업, 시설공사의 원가계산 및 심사·조정 에 관한 사항 15. 계약심사 관련규정 및 제도운영에 관한 사항 16. 원가계산 능력 배양 및 우수사례 전파에 관한 사항 17. 관용차량의 정수배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8. 국공유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19. 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및 처분에 관한 사항 20. 구청사 및 동주민센터의 영선관리에 따른 설계 및 공사감독 에 관한 업무 21. 구청사 및 동청사 청소에 관한 사항 22. 구 청사 시설물 유지관리(송죽원 포함) 23. 구 청사 소방에 관한 사항 24. 공용의 청사, 시설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대수선등에 관한 설계 및 공사시공 감독 업무에 관한 사항(경로당 포함) 25. 대강당·대회의실·예식장 대관에 관한 사항(사용신청(승인) 및 사용료부과(징수)) 26. 사무실 배치·조정에 관한 사항 27. 도시계획시설 중 공공청사부지의 매수청구에 대한 매수여부결정 및 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부서명	분 장 사 무
세 무 과	1. 세무행정의 종합조정 및 통제에 관한 사항 2. 지방세 목표액 책정 및 전망분석에 관한 사항 3. 지방세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 4. 지방세 이의신청(심의위원회) 및 심사청구서 전달에 관한 사항 5. 지방세 운영평가 및 표창에 관한 사항 6. 납세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7. 세정자료의 조사와 세표작성 및 통계에 관한 사항 8. 과세시가 표준액 조사에 관한 사항 9. 과세대장 정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지방세 징수업무의 종합조정 및 통제에 관한 사항 11. 현년도, 과년도 지방세 체납관리 및 독촉고지에 관한 사항 12. 현년도, 과년도 지방세 과오납금 및 가산금조정에 관한 사항 13. 지방세 교부청구 및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 14. 지방세 징수분야 전산화추진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15. 지방세의 수입 및 결산에 관한 사항 16. 수입금 출납사무 및 과오납금 환불에 관한 사항 17. 구금고 계약 및 수납기관 지도에 관한 사항 18. 세무에 관한 제증명 발급 및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 19. 구 자금 관리에 관한 사항 20. 세무전산화 추진운영 21. 세외수입의 총괄 관리에 관한 사항 22. 기부금품 모집 통제에 관한 사항 23. 구 수입증지에 관한 사항 24.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요율 조정에 관한 사항

부서명	분 장 사 무
세 무 과	25. 채권관리 및 보고에 관한 사항 26. 토지과세표준액 적용비율 결정고시에 관한 사항 27. 토지 잠정등급 발급에 관한 사항 28. 부동산 취득세 수납사항 대사에 관한 사항 29. 지방세 체납액 정리계획 수립 30. 현년도, 과년도 지방세 징수촉탁서 처리 및 교부청구에 관한 사항 31. 현년도, 과년도 지방세 재산압류 및 공매에 관한 사항 32. 지방세 징수 포상금에 대한 사항 33. 지방세 체납자 형사고발에 대한 사항 34. 개별주택가격조사 세부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5. 건물현황 및 주변특성 조사에 관한 사항 36. 전산입력 및 시가산정에 관한 사항 37.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개별 통지에 관한 사항 38. 개별주택가격 관련 이의신청 접수 및 재 산정 등에 관한 사항

부서명	분 장 사 무
민원지적과	1. 각종문서 수발·분류에 관한 사항 2. 관인관수에 관한 사항 3. 민원사무(처리)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민원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5. 민원행정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6.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7. 민원1회 방문처리에 관한 사항 8. 종합민원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9. 민원(방문, 전화, 인터넷) 접수 및 심사에 관한 사항 10. 어디서나 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 11. “민원 24” 처리에 관한 사항 12. 민원상담 및 안내에 관한 사항 13. 친절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14. 외부고객만족(CS) 행정에 관한 사항 15. 미추홀 콜센터 연계 운영에 관한 사항 16. 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 17. 기록관리시스템 및 기록관 운영에 관한 사항 18. 행정정보공개 접수 통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9. 행정간행물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0. 행정정보자료실 운영에 관한 사항 21. 기록물 열람 및 대출에 관한 사항 22. 종합문서고 관리에 관한 사항 23. 기록물 관리 업무 지도·감독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4.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에 관한 사항 25.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사항 26. 주민등록에 관한 사항 27. 행정사 업무에 관한 사항 28. 외국인 관리에 관한 사항 29. 결격사유조회에 관한 사항

부서명	분 장 사 무
민원지적과	30. 인감증명관리에 관한 사항 31. 여권발급에 관한 사항 32. 부동산중개업에 관한 사항 33. 개발이익 환수제 운영에 관한 사항 34.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35. 개발부담금 대상사업 파악에 관한 사항 36. 개발부담금 조사·산정에 관한 사항 37. 개발부담금 관련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38.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산정에 관한 사항 39. 개별공시지가 관련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40. 개별공시지가 전산관리에 관한 사항 41.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발급에 관한 사항 42. 구 부동산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3. 지적업무의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44. 이동지 검사 및 정리에 관한 사항 45. KLIS시스템 토지이동정리 46. 토지분할 허가에 관한 사항 47. 지적복구에 관한 사항 48. 지적장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9. 지적통계 업무에 관한 사항 50. 지적기준점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51. 축척변경 사업에 관한 사항 52.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정리에 관한 사항 53.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관한 사항 54. 지적 및 측량에 관한 사항 55.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관한 사항 56.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에 관한 사항 57. 도로명 시설물 일제조사 및 정리

부서명	분 장 사 무
민원지적과	58. 도로명주소 관리시스템 운영 및 관리 59. 새주소 정착 및 활용 홍보 60. 도로명주소 고지·고시에 관한 사항 61. 부동산거래시스템 관리에 관한 사항 62. 부동산거래 신고서 접수에 관한 사항 63. 신고서 확인 및 신고필증 발급에 관한 사항 64. 가격적정서 진단, 세부자료입력에 관한 사항 65. 부동산 계약서 검인업무에 관한 사항 66. 부동산등기해태과태료 부과업무에 관한 사항 67. 지적공부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68. 지적전산 및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업무에 관한 사항 69.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에 관한 사항 70. 도시계획도면 관리에 관한 사항 71. 토지대장 관리 및 발급에 관한 사항 72.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및 등록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항 73.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관리에 관한 사항 74. 토지거래계약 허가에 관한 사항 75. 토지거래계약허가 사후관리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76. 토지거래계약허가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사항 77. 토지거래계약허가 소송수행 및 신고포상금제 운영에 관한 사항 78. 외국인 토지취득에 관한 사항 79. 부동산 실명법에 관한 사항 80. 토지(임야)대장 소유권 정리에 관한 사항 81. 토지 소유자 주소등록에 관한 사항 82. 국가소송(미등기 토지)에 관한 사항 83. 지적정보 자료제공에 관한 사항(조상땅 찾아주기) 84.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자료제공에 관한 사항 85. 부동산거래 과태료 부과 업무에 관한 사항

부서명	분 장 사 무
복지정책과	1.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복지사업의 기획·개발 및 시행에 관한 사항 4. 지역사회복지정보의 개발·관리에 관한 사항 5. 사회복지 시책 홍보·교육에 관한 사항 6.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의 관리에 관한 사항 7. 국가보훈단체지원·협력 및 보조 등에 관한 사항 8. 사회복지기금 운영 계획 및 결산 총괄 9. 사회복지기금 중 사회복지사업 및 장학사업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10. 사회복지 법인 관리 및 지도 감독 11.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2. 부랑인 및 노숙자보호에 관한 사항 13. 행려자·사망자 관리에 관한 사항 14. 차상위계층 등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15. 사회복지 업무보조 공익근무요원 관리에 관한 사항 16. 복지대상자 신규조사에 관한 사항 17. 복지대상자 확인조사 및 변동·자격관리에 관한 사항 18. 보건 및 복지서비스 연계업무에 관한 사항 19. 이웃돕기 지원 및 관리·후원 결연에 관한 사항 20. 자원봉사센터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21. 민관협력복지사업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2. 지역사회투자사업 총괄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3. 푸드뱅크 및 푸드마켓 설치·운영·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4.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관리 25. 연수품앗이 운영 및 관리 26. 사례관리 운영 및 자원에 관한 사항 27. 희망복지 129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28. 긴급지원에 관한 사항 29.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사업 연계 30. 그 밖에 복지경제국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부서명	분 장 사 무
사회복지과	1.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기본방향 및 연간 조사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의 급여지급 관리 전반 사항 3. 복지대상자 신규신청에 따른 보장결정 및 통지에 관한 사항 4. 보장비용 및 금품의 반환·징수·감면에 관한 사항 5. 영구임대주택 입주신청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기존주택전세임대, 다가구매입임대 입주자 선정에 관한 사항 7. 전세자금 융자지원에 관한 사항 8. 차상위계층 등 보장결정 및 통지에 관한 사항 9. 차상위계층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의료급여대상자 관리 및 의료급여의 실시에 관한 사항 11. 의료급여기금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12. 의료급여 대불금 및 부당이득금 채권관리에 관한 사항 13. 의료급여 진료비 지급 14. 의료급여 사후관리(본인부담금 및 환급금, 환수결정내역, 투여기간 관리, 의약품 관리)에 관한 사항 15. 의료급여 자격관리에 관한 사항 16.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 운영 17. 의료급여 사례 관리 18. 의료급여 제한 여부 조사 및 상해요인, 중복청구 조사 19. 의료급여 연장승인 및 선택병의원 관리 20. 의료급여 심의위원회 관리 21.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22. 장애인보장구 지원 관리 23. 장애인복지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4.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설치허가·운영지원 및 지도에 관한 사항 25. 장애인의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 26.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7. 장애인 편의시설 건축협약에 관한 사항 28. 장애인단체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9.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에 관한 사항 30. 장애인 실명예방 사업에 관한 사항

부서명	분 장 사 무
사회복지과	31. 재가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사항 32. 장애인 고속도로 감면카드 발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3. 복지카드 교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4.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5. 노인복지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6. 고령화 대책에 관한 사항 37. 경로행사 등 경로사업의 실시 지원에 관한 사항 38. 기초노령연금 지급 사항 39. 장기요양기관 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0. 장수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41. 노인 건강증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2. 노인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43. 경로당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44.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5. 노인복지시설(경로당 포함) 보수에 관한 사항 46. 노인의 날 및 경로의 달 행사지원에 관한 사항 47. 노인학대예방사업에 관한 사항 48. 노인단체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49. 경로효친사상 양양 및 노인봉양의식 제고에 관한 사항 50. 사회복지기금 중 노인복지기금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51. 장사 등에 관한 사항 52. 외국인묘지 처리(매장·개장·유실 등)에 관한 사항 53. 노인 일자리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 54. 노인일자리 사업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55. 노인인력개발센터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56. 자활사업대상자 선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7. 자활사업 프로그램 실시 및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 58. 자활공동체 인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9. 희망키움통장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

부서명	분 장 사 무
사회복지과	60. 자활기관협의체 구성·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1. 지역자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62. 차상위 일자리지원 사업 63. 자활장려금 지원에 관한 사항 64. 희망리본프로젝트 지원에 관한 사항 65. 사회복지기금 중 기초생활보장기금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66.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67. 가사간병방문서비스 사업에 관한 사항 68. 주거현물급여 집수리사업에 관한 사항

부서명	분 장 사 무
가정복지과	1.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운영·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여성복지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여성단체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4.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5.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 6. 여성능력개발에 관한 사항 7. 여성권익 증진 사업에 관한 사항 8. 여성발전기금에 관한 사항 9. 다문화가족 지원 및 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10. 건강가정 지원 및 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11.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12. 행복한 가정만들기 상담원 운영에 관한 사항 13. 연수구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사항 14. 위기가족 상담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15.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 16. 저출산 대책에 관한 사항 17. 출산장려금 지원 및 다자녀가정 아동양육비 지원에 관한 사항 18. 결혼중개업 관리에 관한 사항 19. 보육사업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0. 보육시설 인가에 관한 사항 21. 보육시설 운영지원 및 관리 지도에 관한 사항 22.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급여지급 사항 23. 보육시설 종사자 관리에 관한 사항 24. 구립보육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 25. 도담도담 장난감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26. 아동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27. 아동복지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8. 아동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29.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급여 지급 사항 30. 시소와 그네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부서명	분 장 사 무
가정복지과	31. 아동복지시설의 설치·운영·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2. 아동인지능력향상사업에 관한 사항 33. 청소년 육성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4. 청소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35. 청소년 전용시설 확충, 청소년시설 신고처리 및 위탁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36. 모범 청소년 발굴 표창에 관한 사항 37. 각종 청소년행사 개최에 관한 사항 38. 청소년 동아리 지원 육성에 관한 사항 39. 어려운 청소년보호 지원에 관한 사항 40. 청소년 진로 생활상담 지도에 관한 사항 41. 청소년보호법 관련 과징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42. 청소년보호법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43. 청소년 유해매체물, 약물 관리에 관한 사항 44.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및 통행제한구역 지정 운영에 관한 사항 45. 청소년보호법 위반사범 관리에 관한 사항 46.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에 관한 사항 47. 그 밖에 청소년보호 및 청소년보호법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48. 청소년공부방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49. 청소년 지도자 양성 및 지도관리에 관한 사항 50. 드림스타트 사업 종합계획 수립 및 운영위원회 구성 및 관리 51. 드림스타트 사업 사례관리 및 사례회의에 관한 사항 52. 드림스타트 사업 서비스 조정·연계 및 개발 53. 드림스타트 사업수행기관 및 협력·후원기관 선정 및 관리 54. 드림스타트 센터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55. 드림스타트 사업 관련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6. 드림스타트 사업 민간 전문인력 관리 및 슈퍼비전 체계 운영

부서명	분 장 사 무
지역경제과	1. 지역경제 육성 세부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2. 수출 진흥에 관한 사무에 관한 사항 3. 지역산업에 관한 통계의 작성 유지 및 보급에 관한 사항 4. 지역산품 전시회 개최 및 구매자 유치지원에 관한 사항 5. 소비자보호에 관한 사항 6. 지역물가 종합대책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7. 방문·통신·전화권유 판매업에 관한 업무 8. 지역특화산업 육성개발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9. 지역경제 육성을 위한 자금 세제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10. 어선등록 및 변경신청 등에 관한 사항 11. 주민 지역경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12. 농업행정의 종합 및 조정에 관한 사항 13. 농업단체 지도육성에 관한 사항 14. 양정에 관한 사항 15. 원예 및 특용작물에 관한 사무에 관한 사항 16. 농림 축 수산물 생산지원 및 관리지도에 관한 사항 17. 농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18. 양식사업 및 어업기반 조성을 위한 지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9. 식량작물 생산 장려에 관한 사항 20. 농작물 병충해방제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1. 농지원부 작성 및 교부에 관한 사항 22. 농지전용에 관한 사항 23. 농지타용도 일시 사용에 관한 사항 24.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및 징수 관리에 관한 사항 25. 자경증명발급 신청에 관한 사항 26. 식생활교육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부서명	분 장 사 무
지역경제과	27.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8. 어선표지판 교부 신청에 관한 사항 29. 어업허가 신청 및 어업폐지 신고에 관한 사항 30. 어선등록말소 신청 및 어업휴업 신고에 관한 사항 31. 어업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에 관한 사항 32. 선박원부등본 교부에 관한 사항 33. 수산물 원산지 표시지도에 관한 사항 34. 어선 건·개조 발주에 관한 사항 35. 낚시어업신고에 관한 사항 36. 축산업 등록제에 관한 사항 37. 축산진흥 지방특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8. 축산물 유통개선 지도에 관한 사항 39. 축산물 등급제 지도에 관한 사항 40. 농·축·수산물 직거래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1. 축산물보관업 허가에 관한 사항 42. 축산물 운반업, 판매업 신고에 관한 사항 43. 축산식품 행정의 종합기획 조정에 관한 사항 44. 축산물 보관업, 운반업, 판매업의 지도관리에 관한 사항 45. 축산물 위생관리 지도에 관한 사항 46. 유기동물 보호·처리에 관한 사항 47. 동물등록제에 관한 사항 48. 경지이용계획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49. 농업자재의 관리에 관한 사항 50. 농수산물 가공공장의 지정에 관한 사항 51. 농가부업 장려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52. 국유재산에 관한 사항

부서명	분 장 사 무
지역경제과	53. 수출농식품 지원에 관한 사항 54. 시장개설 등록 및 변경신청 등에 관한 사항 55. 가격표시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56.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지도에 관한 사항 57. 대형 농·수산물 유통센터 지원에 관한 사항 58. 농·수·축산물 가격동향 관리에 관한 사항 59. 농·수·축산물 직거래에 관한 사항 60. 대부업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사항 61. 대부업 관리 지도에 관한 사항 62. 부정경쟁 방지업무 관리 지도에 관한 사항 63. 복권업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64. 개인서비스업 품목가격조사 및 관리지도에 관한 사항 65. 개인서비스업 조사원 관리에 관한 사항 66. 재래시장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67. 상권활성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8. 지역중소상인 지원에 관한 사항 69. 상점가 진흥조합 관리 지도에 관한 사항 70. 유통상생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71.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72.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관한 사항 73. 석유사업법에 관한 사항 74.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임에 관한 사항 75. 석유사업법 위임에 관한 사항 76.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위임에 관한 사항 77. 민관 공동출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부서명	분 장 사 무
지역경제과	78. 계량기에 관한 사무에 관한 사항 79. 가격표시제 실시업소 지정 관리에 관한 사항 80. 기계 및 섬유공업 지도육성에 관한 사항 81. 지역 상공단체의 지도 육성에 관한 사항 82. 유통산업 근대화 사업의 시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3. 민속공예산업 육성 실시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84. 우수토산품 등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85. 공예품 등 전문 생산업체 지원에 관한 사항 86. 토산품 등 생산기술 전승자의 발굴 보호에 관한 사항 87. 지방공업육성을 위한 종합기획 조정에 관한 사항 88. 공장등록 및 제증명에 관한 사항 89. 공장설립 승인에 관한 사항 90. 공산품 안전관리법에 관한 사항 91. 지역산업 발전을 위한 공장유치에 관한 사항 92. 그 밖에 상공에 관한 사무에 관한 사항 93. 가스안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94. 가스안전점검,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95.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관한 사항 96.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관한 사항

부서명	분 장 사 무
지역경제과	97. 도시가스사업법에 관한 사항 98. 도시가스사업법 위임에 관한 사항 99.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위임에 관한 사항 100. 신재생에너지사업에 관한 사항 101.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102. 불법공산품 지도·단속 및 원산지표시관련 업무 103.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관한 다음의 사항 가. 개선·과기·수거명령 및 언론매체 등을 통한 공표교환 환불 수리 등의 명령 나. 보고 및 검사 등 다. 과태료 부과·징수 104. 중소기업 창업지도에 관한 사항 105. 승강기에 관한 사항 106.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위임에 관한 사항 107. 신용보증재단 출연에 관한 사항 108. 공공기관 법인카드 적립포인트 관리 109. 유료광고 조례에 관한 사항 110. 담배 도매인 지정 및 폐업에 관한 사항 111. 노·사·정 협의회에 관한 사항 112. 노동행정의 계획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113. 노동단체의 지도육성에 관한 사항 114. 근로자 복지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115. 노동대책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부서명	분 장 사 무
일자리창출과	1. 일자리 창출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 2.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시책 개발 3. 지역브랜드 일자리 창출 시책 개발 4. 지역고용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맞춤형 직업훈련 개발에 관한 사항 6. 기업연계형 인력지원에 관한 사항 7. 연수일자리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8.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에 관한 사항 9.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관리에 관한 사항 10.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지원업무에 관한 사항 11. 고용 정책 사업에 관한 사항 12. 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관한 사항 13. 취업정보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14. 구인·구직의 개척 및 취업알선에 관한 사항 15. 구인·구직 등록 및 상담에 관한 사항 16. 구인·구직 만남의 날(취업박람회)에 관한 사항 17. 무허가 직업소개 행위단속에 관한 사항 18. 직업안내소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9. 유·무료 직업소개사업 허가에 관한 사항 20. 직업소개 사업자 및 업무보조원의 교양 및 훈련에 관한 사항 21.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 22. 사회적기업 교육 및 홍보사업 23. 사회적기업 네트워크 구축 및 연계사업 24. 사회적기업 생산품 우선 구매 25. 협동조합 제도 홍보에 관한 사항 26. 마을기업 육성사업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7. 마을기업 육성사업 홍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부서명	분 장 사 무
일자리창출과	28. 중소기업기본법에 관한 사항 29. 창업 민원실 운영에 관한 사항 30. 지역 내 기업의 정보 기술 및 자금수요파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1. 지방중소기업 육성지원 세부계획의 수립 추진에 관한 사항 32. 당해지역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 33. 중소기업 육성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 34.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에 관한 사항 35. 지방 기업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부서명	분 장 사 무
청소행정과	1. 폐기물처리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도로환경미화원 관리에 관한 사항 3. 청소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 4.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5. 폐기물처리업 허가(변경)·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6. 폐기물수집·운반증 발급에 관한 사항 7. 폐기물 종량제에 관한 사항 8. 청소대행업체 지도·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9. 폐기물적환장에 관한 사항 10. 폐기물 처리시설 반입료 및 전반적인 관련 사항 11. 청소대행업체 대행계약 및 대행료 지급에 관한 사항 12. 폐기물배출사업장 관리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13.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에 관한 사항 14.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신고에 관한 사항 15. 지정폐기물(의료폐기물 포함) 기본적 처리증명 16. 폐기물 배출사업장 지도점검·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17. 종량제봉투·대형폐기물처리 전반에 관한 사항 18. 자원재활용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9. 폐기물감량 및 자원재활용에 관한 사항 20. 폐기물 처리신고의 수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1. 그 밖에 재활용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22.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 사업 23.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관리 및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24.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부서명	분 장 사 무
청소행정과	25. 1회용품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26. 나눔장터 운영에 관한 사항 27. 포장폐기물 발생억제에 관한 사항 28. 재활용센터 관리 29. 빈용기보증금제도 관련 사항 30.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단속·신고포상금에 관한 사항 31. 환경(청소)순찰 및 처리에 관한 사항 32.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 등에 관한 사항 33. 처리업체 지도점검·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부서명	분 장 사 무
위생관리과	1. 공중위생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중위생법 관련 조례개정에 관한 사항 3. 공중위생업소(아·미용, 숙박, 목욕 등) 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항 4. 공중위생관련업(위생처리업, 위생관리용역업 등) 신고 및 변경사항에 관한 사항 5. 공중위생업소 교육에 관한 사항 6. 공중·식품위생단체 관리에 관한 사항 7. 아·미용사 면허증 교부 및 재교부에 관한 사항 8. 공중이용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9. 식품위생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0. 식품위생법 관련 조례개정에 관한 사항 11. 유흥 및 단란주점 허가 및 변경허가에 관한 사항 12. 식품(식품첨가물)제조·가공업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사항 13. 식품접객업 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항 14. 식품관련업 지위승계에 관한 사항 15.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항 16. 식품품목보고(변경포함)에 관한 사항 17. 식품소분업·판매업·용기·포장류 제조업 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항 18.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항 19. 집단급식소 및 위탁급식업 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항 20. 식품위생업소 교육에 관한 사항 21. 조리사 면허증 교부 및 재교부에 관한 사항 22. 식품동원(충무계획)업무에 관한 사항 23. 음식문화 개선사업(특색음식거리 지정, 맛있는 집 선정 등)에 관한 사항 24. 좋은 식단 보급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5. 모범음식점 육성 및 지도관리에 관한 사항 26. 식품진흥기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7. 위생감시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8. 공중·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29. 공중·식품 무허가(무신고)업소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30. 지도단속 관련 신고, 진정 등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

부서명	분 장 사 무
위생관리과	31. 식품소분·판매업소(자동판매기, 기타식품판매업 등)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32. 공중위생업소 등급선정에 관한 사항 33.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명예공중위생감시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4. 공중·식품분야 사법경찰관리 직무집행에 관한 사항 35. 공중·식품 위생업소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에 관한 사항 36. 공중·식품 위생업소 특정관리 대상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37. 음식점 원산지 표시 단속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삭제) 38. 공중 및 식품접객업소내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39. 유통식품관리(식품제조가공업 등)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0. 부정불량식품 단속·수거·압류 및 폐기에 관한 사항 41. 집단식중독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2. 1399 민원신고 처리에 관한 사항 43. 집단급식소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44. 식품제조가공업소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45.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46.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47.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 48. 고열량, 저영양 식품관리 등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법에 관한 사항 49.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50. 유전자재조합식품 지도단속 및 수거·압류·폐기 등에 관한 사항 51. 식품안전성검사 주민청구제 및 이물 민원신고 조사에 관한 사항 52. 식품생산자실명제 추진에 관한 사항 53.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지정업소 관리에 관한 사항 54. 식품제조업소 위생등급 설정관리에 관한 사항 55. 재래시장 위생관리사업에 관한 사항 56.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부서명	분 장 사 무
건 설 과	1. 건설행정의 종합 및 기획에 관한 사항 2. 국·공유재산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도로·하천·구거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 건설기계조종사 면허관리에 관한 사항 5. 건설기계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건설기계 대여업 관리에 관한 사항 7. 공유수면 관리에 관한 사항 8. 전문건설업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시설동원(일반토지, 건설업체, 중기정비업체)에 관한 사항 1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사항 11.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계약, 지출에 관한 사항 12. 노점상 단속 및 정비에 관한 사항 13. 노상적치물 단속 및 정비에 관한 사항 14. 도로 및 건설공사 계획수립 (도로폭 20미터 이하)에 관한 사항 15. 토목, 건설공사의 시행 및 유지관리(도로폭 20미터 이하)에 관한 사항 16. 20미터 이하 도로의 노선인정과 폐지변경에 관한 사항 17. 20미터 이하 도로 노면 및 전체도로 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8. 도로의 안내표지판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9. 도로의 안내표지판 설치에 관한 사항 20. GIS 공간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21. 사도 개설허가에 관한 사항 22. 도시계획시설중 도로의 매수청구에 대한 매수여부 결정 및 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23. 지하철도(보도포함)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24. 보행자전용도로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25. 도로관리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26. 도로굴착 및 복구에 관한 사항

부서명	분 장 사 무
건 설 과	27. 공동구 관리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28. 공동구 설치 및 점용료 등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29. 공동구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30. 도로 및 가로정비(도로제설포함)에 관한 사항 31. 건설공사용 자재 및 기구 출납보관에 관한 사항 32.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공사설계 시공감독에 관한 사항 33. 공공하수도설치, 개축 및 수선공사에 관한 사항 34. 간이 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5. 하수종별 책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6. 하수 수질검사에 관한 사항 37. 하수사용 계량기 설치 및 교체에 관한 사항 38.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 및 집계에 관한 사항 39. 지하수 개발에 관한 사항 40. 지하수 계측기 설치 및 교체에 관한 사항 41. 배수설비설치신고 및 준공검사에 관한 사항 42. 하천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3. 자전거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4. 자전거이용시설(자전거도로 등)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5. 자전거이용활성화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46. 자전거 행사에 관한 사항 47. 자전거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8. 자전거수리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49. 무단방치자전거 정비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0. 그 밖에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51. 도로조명 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52. 지하차도 전기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53. 보도육교 전기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54. 전기사업법에 관한 사항 55. 전기공사업법에 관한 사항 56.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57. 도시환경국 타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부서명	분 장 사 무
건 축 과	1. 건축물 등기필 정리에 관한 사항 2. 건축물관리대장 관리·말소 및 공용발급에 관한 사항 3. 건축물대장 전산화에 관한 사항 4. 무허가 건축물 단속 및 철거에 관한 사항 5. 가설건축물 허가 및 신고수리에 관한 사항 6. 건축신고 및 사용승인에 관한 사항 7. 향측 업무에 관한 사항 8. 위법건물 이행강제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9. 주차장법 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사항 10.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에 관한 사항 11. 건축행정의 종합조정에 관한 사항 12.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에 관한 사항 13. 건축시공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4. 건축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5. 건축사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6. 냉방시설 및 환기시설의 배기구 점검에 관한 사항 17. 용벽 및 공작물 축조 신고에 관한 사항 18. 주택행정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1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따른 주택 재건축·재개발에 관한 사항 20. 시설(건물, 토지)동원에 관한 사항 21. 아파트의 하자보수에 관한 사항 22. 아파트 관리주체에 대한 감독에 관한 사항 23. 공동주택 사업계획승인 및 사용검사에 관한 사항 24. 공동주택 분양승인에 관한 사항 25.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부서명	분 장 사 무
건 축 과	26.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관한 사항 27. 임대사업자 등록 및 등록사항 변경에 관한 사항 28. 임대주택 분양전환허가 및 매각신고에 관한사항 29. 도시형생활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30.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31. 임대사업자 등록 및 등록사항 변경에 관한 사항 32. 도시기반시설부담금 부과·징수와 관련한 사항 33.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점검 사항 34. 전문가와 함께하는 건축행정서비스에 관한 사항 35. 건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36. 간단한 도면 대행 서비스에 관한 사항 37.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정정에 관한 사항 38. 공동주택 하자보수증권 관리에 관한 사항

부서명	분 장 사 무
도시계획과	1. 옥외광고물 종합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2. 옥외광고물 신고 및 허가에 관한 사항 3.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 실시 및 위탁에 관한 사항 4. 옥외광고업의 신고 및 지도, 관리에 관한 사항 5. 옥외광고업 등록업체 관리에 관한 사항 6.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에 관한 사항 7. 옥외광고물 심의에 관한 사항 8. 현수막 게시대 및 게시판 설치, 관리 감독에 관한 사항 9. 불법 유동광고물 단속에 관한 사항 10. 불법 고정광고물 정비에 관한 사항 11. 옥외광고물 전수조사에 관한 사항 12. 옥외광고물 위반에 관한 사항 13.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 14. 도시경관사업에 관한 사항 15. 도시정비사업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16. 도시영세민 주거환경 개선사업 기본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17.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18. 개발행위 허가에 관한 사항 19.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포함) 20.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총괄관리에 관한 사항 21.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사항 22. 도시개발 특별회계에 관한 사항 23. 환지 증명원(예정지, 확정) 발급에 관한 사항 24.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사항 25. 온천 개발에 관한 사항

부서명	분 장 사 무
환경보전과	1. 환경보전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환경영향평가 및 사전환경성 검토 주민의견 수렴 등에 관한 사항 3. 환경오염특별대책지역내의토지이용 및 시설제한에 관한 사항 4. 환경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5. 환경보전유공자포상계획수립 6.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7. 먹는물 공동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8.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 설치신고 및 변경에 관한 사항 9. 토양오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10. 휘발성 유기오염물질·기타수질오염원의 신고 및 변경에 관한 사항 11. 잔류성유기오염물질배출시설 및 관리대상기기의 신고에 관한 사항 12. 대기 배출원 및 전국 오염원 조사에 관한 사항 13. 대기, 폐수, 소음 배출시설의 허가·신고 및 변경에 관한 사항 14. 배출업소 가동개시 신고에 관한 사항 15. 한강중역권 물관리에 관한 사항 16. 교통소음·진동규제지역내의 방음·방진 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 17. 유해화학물질 영업등록 및 변경에 관한 사항 18. 저수조청소업 신고 및 변경에 관한 사항 19. 중수도 등에 관한 사항 20. 환경기술인 및 다중이용시설 법정교육에 관한 사항 21. 습지관리보호지역에 관한 사항(내륙·연안 포함) 22. 오존주의보 발령 및 해제에 관한 업무에 관한 사항 23. 수렵면허에 관한 사항 24. 야생동·식물 보호 및 자연보호에 관한 사항 25. 정부비축물자 관리에 관한 사항

부서명	분 장 사 무
환경보전과	26.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7. 기후변화대응 및 저탄소 녹색성장 일반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28. 기후변화대응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9. 저탄소 녹색성장 및 녹색생활 실천·행사 추진에 관한 사항 30. 저탄소 녹색통장(탄소포인트)갯기 추진에 관한 사항 31.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 및 녹색생활 업무에 관한 사항 32.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 등 인벤토리 구축에 관한 사항 33. 녹색생활 확산 및 시민실천 정착화 업무에 관한 사항 34. 탄소발자국 우수아파트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35. 옥상농업시범사업에 관한 사항 36. 탄소배출권 거래 사업 본격추진에 관한 사항 37.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사항에 관한 사항 38. 대기, 폐수, 소음 배출시설의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39. 대기, 폐수, 소음 배출시설의 부과금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 40. 절수설비 설치에 관한 사항 41. 무허가·신고 배출업소 행정처분 사항 42. 비산먼지 및 특정공사 사전신고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3. 비산먼지 사업장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44. 생활소음, 생활악취 지도단속 업무에 관한 사항 45. 자동차배출가스 단속 및 행정처분 사항 46. 운행차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사항 47. 특정경유자동차 검사에 관한 사항 48. 자동차정밀검사 체납 과태료 징수·결손 처분에 관한 사항 49. 유해화학물질등록업체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50.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51. 저수조 청소업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52. 휘발성 유기오염물질·기타수질오염원의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부서명	분 장 사 무
환경보전과	53. 잔류성유기오염물질배출시설 및 관리대상기기의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54. 다중이용시설 검사에 관한 사항 55. 유증기 회수시설 설치 및 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 56. 환경오염신고 “128 환경신문고” 운영에 관한 사항 57. 환경오염사고 대비에 관한 사항 58. 악취, 먼지, 오존 등 상황실 운영에 관한 사항 59. 환경사범 수사 및 송치에 관한 사항 60. 대기·수질 TMS구축 및 사업장 관리에 관한 사항 61. 민간 환경감시단 업무에 관한 사항 62.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지정 및 단속에 관한 사항 63. 환경생태탐방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64. 폐석면 관리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65. 석면피해구제에 관한 사항 66. 무인악취포집기 운영 등 관리에 관한 사항 67.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사항 68. 악취배출사업장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69.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70. 분뇨 등 관련 영업허가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71.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 72. 개인하수처리시설 등 설계·시공업 및 관리업에 관한 사항 73.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운영에 관한 사항 7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항 75. 빗물이용시설의 설치·관리 76.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계·시공업의 등록 77. 연수의제21실천협의회 추진에 관한 사항 78. GCF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

부서명	분 장 사 무
공원녹지과	1. 녹지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및 조성에 관한 사항 2. 영림계획의 인가, 변경명령 및 사업신고 수리에 관한 사항 3. 조림사업 추진 및 육림관리에 관한 사항 4. 산불방지 대책 및 입산통제구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 5. 산림병충해 방제에 관한 사항 6. 천연림 보육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7. 임목벌채 등 산림훼손 허가와 신고수리에 관한 사항 8. 산지전용 허가와 신고수리에 관한 사항 9. 산림보호에 관한 사항 10. 입산신고에 관한 사항 11. 지역 공동산화경방활동에 관한 사항 12. 부정임산물 단속 등 임산물 반·출입 통제에 관한 사항 13. 녹지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4. 가로수 식재 보호에 관한 사항 15. 사방사업에 관한 사항 16. 도시녹화 추진계획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17. 구 단위 도시녹화 추진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18. 도시녹화 추진 기술지도 및 묘목, 자재 등 확보 공급에 관한 사항 19. 산림동원에 관한 사항 20. 보행자전용도로의 수목과 시설물에 관한 사항 21. 미관광장의 수목과 시설물에 관한 사항 22. 시민참여 녹화사업 및 푸른 마을 가꾸기 사업에 관한 사항 23. 마을쉼터 조성 및 담장 허물고 나무심기 사업에 관한 사항 24. 학교 주변 녹화추진에 관한 사항 25. 교통섬 녹화 및 가로녹지 조성에 관한 사항 26. 도시림 조성 및 관리

부서명	분 장 사 무
공원녹지과	27. 도시계획시설(도시공원, 녹지)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에 관한 사항 28.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관리의 위탁 29. 도시공원, 녹지의 사용 및 점용허가 및 원상회복에 관한 사항 30. 도시공원 및 녹지의 입장료, 사용료, 점용료 및 관리위탁료 징수에 관한 사항 31. 녹지활용계약 및 녹화계약 32. 도시공원 및 녹지 협의 관련 사항 3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령 등의 위반자 처분에 관한 사항 (단, 미조성 도시공원 및 녹지내 불법 건축물의 경우 건축법에 의해 처리 되어야할 부분은 제외한다.) 34. 도시공원, 녹지 GIS(지리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35. 도시공원 및 녹지의 설치에 관한사항 36. 공원 재조성(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37. 공원내 체육시설의 설치·개보수(증축)·변경, 리모델링,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 38. 도시공원, 녹지 채권 발행에 관한 사항 39. 미조성 도시공원, 녹지의 매수청구에 관한 사항 40. 미조성 도시공원, 녹지의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사항 41. 도시공원 조성계획의 입안(도시자연공원 제외) 42. 도시공원 및 녹지의 관리에 관한사항 43. 도시자연공원구역내 행위허가 44. 도시공원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사무(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45.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령에 의한 공익을 위한 감독처분 및 손실보상

부서명	분 장 사 무
공원녹지과	46. 도시공원대장 및 도시자연공원구역대장 작성 및 관리 47.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령 등의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48. 도시공원 및 녹지 공원 등 전기업무에 전반에 관한 사항 49. 공유재산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50.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원화장실 관리 51. 도시공원 및 녹지내 수경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52. 소나무류의 이동에 따른 허가와 신고 수리에 관한 사항 53. 연수둘레길 조성·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54. 등산로 정비·보수·관리에 관한 사항 55. 산림의 생태적 복원에 관한 사항 56.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등의 관리 57. 보안림의 지정, 지정해제, 지정의 고시, 관리에 관한 사항 58. 도시계획시설(공원: 묘지공원 제외, 녹지, 일반·경관 광장)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신청 59. 도시공원위원회 심의안건 제출 60.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6조 기준 도시자연공원에 관한 경과조치에 의거 신규로 증가된 근린공원 종합계획 및 공원조성, 관리에 관한 사항 61. 아암도 해안공원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부서명	분 장 사 무
교통행정과	1. 교통행정 종합계획 수립 2. 교통체계관리(TSM) 추진 3. 교통관련 소규모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5.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사항 6. 교통안전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7. 공영(노상·노외) 주차장 관리에 관한 사항 8. 민영주차장 설치 신고처리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9. 공영주차장 설치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0. 장·단기 주차시설 확충계획 투자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11. 거주자 우선주차제에 관한 사항 12. 이면도로 주차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13. 도시계획시설 중 주차장의 매수청구에 대한 매수여부 결정 및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 14. 기계식주차장 설치에 따른 건축협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5. 교통영향평가 업무에 관한 사항 16. 아파트부설주차장 개방지원에 관한 사항 17. 건축물부설주차장 개방지원에 관한 사항 18.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업무에 관한 사항 19.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및 개선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20.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21. 차 없는 거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사항 23. 여객자동차 터미널에 관한 사항

부서명	분 장 사 무
교통행정과	24.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관한 사항 25. 교통불편신고 처리에 관한 사항 26. 교통량 조사에 관한 사항 27. 화물자동차 운송 주선사업에 관한 사항 28.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에 관한 사항 29.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차량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30. 자동차 대여사업에 관한 사항 31. 자동차 점검 및 정비명령 등(사업용자동차 지도점검 제외) 32. 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 행위단속 및 조치(고발, 정비명령)에 관한 사항 33. 법령위반 차량 과태료 처분에 관한 사항 34. 불법개조 자동차에 대한 원상복구 및 고발에 관한 사항 35. 의무보험 미가입자 가입촉구 및 가입사실 증명 서류 제출에 관한 사항 36. 질서위반 행위규제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의견 제출 통보 및 과태료 감경 부과에 관한 사항 37.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48조 제3항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 38. 자동차 강제처리에 관한 사항 39. 자동차관리사업(매매업·정비업·해체재활용업) 관리 40. Green Parking 사업에 관한 사항 4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범칙금 및 검찰 송치에 관한 사항 42. 무단방치 자동차 범칙금 및 검찰 송치에 관한 사항 43. 무단방치 자동차 처리

부서명	분 장 사 무
차량민원과	1.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2. 시간제 계약직·교통서포터즈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3. 고정형·차량형 CCTV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4. 온라인 교통불편민원 상담 5. 주정차위반 단속상황실 운영에 관한 사항 6. 견인사업소 지정·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7. 자동차 등록번호판 교부대행자에 대한 지정 취소 및 사업정지 명령에 관한 사항 8. 자동차 등록 원부 비치 관리에 관한 사항 9. 신규등록 거부에 관한 사항 10. 자동차등록 번호판 탈·부착 및 봉인에 관한 사항 11. 자동차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사항 12.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에 관한 사항 13. 자동차등록 이의신청 처리에 관한 사항 14. 자동차 검사, 자동차 점검에 관한 사항 15. 자동차등록 관련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16. 자동차 멸실 인정서 발급에 관한 사항 17. 자동차 변경등록 · 이전등록 · 말소등록에 관한 사항 18. 자동차 신규등록 19. 자동차 등록증 교부 20. 자동차 경정등록 21. 자동차 저당권 변경 · 등록 · 말소 22. 자동차 등록번호판 교부대행자 지정에 관한 사항

부서명	분 장 사 무
차량민원과	23. 자동차 검사 명령에 관한 사항 24. 이륜자동차 사용정지 명령에 관한 사항 25. 이륜자동차 관리에 관한 사항 26. (과년도) 체납 책임보험 과태료 징수,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 27. (과년도) 체납 주정차과태료 과태료 징수,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 28. (과년도) 체납 검사지연 등록지연 과태료 징수,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 29. 위 26. 27. 28.호와 관련한 압류·해제 30. 자동차 과태료 관련 압류 및 해제등록

부서명	분 장 사 무
재난방재과	1. 지역단위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수립 집행에 관한 사항 2. 안전관리위원회 및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4. 재난대비 유관기관 협조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5. 재난대비 훈련실시에 관한 사항 6. 재난상황종합관리 및 평시보고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7. 재난대비물자·자원·장비파악 및 재난단계 규모·유형별 동원계획 수립 운영에 관한 사항 8. 재난관리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 9. 인적재난의 사고수습에 관한 사항 10. 재난예방 특정관리대상 시설 안전관리 총괄 11. 재난예방을 위한 특별·긴급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 지도 12. 재해예방 및 재해응급대책의 추진에 관한 사항 13. 자연재난 피해조사에 관한 사항 14. 재해복구 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15. 방재계획의 수립 집행에 관한 사항 16. 재해방지를 위한 출동명령 등 행정조치에 관한 사항 17.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8.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19. 풍수해보험 가입·운영에 관한 사항 20.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 협의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21. 재해지도 제작 및 활용에 관한 사항 22. 재해발생예상시설 점검 및 조치에 관한 사항 23.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에 관한 사항 24.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 25. 구 산하기관(부서)의 재난관리행정에 대한 지도에 관한 사항

부서명	분 장 사 무
재난방재과	26. 국가기반시설 재난관리에 관한 사항 27. 안전문화 활동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28. 재난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9. 안전점검의 날 등 행사 및 캠페인에 관한 사항 30. 유선 및 도선업무 안전관리 및 지도에 관한 사항 31. 그 밖에 재난예방행정에 관한 사항 32. 방범취약지 야간 순찰에 관한 사항 33. 재해구호에 관한 사항 34. 재해구호 물자의 출납보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5. 민방위업무의 운영에 관한 사항 36. 민방위 시설장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7. 인력동원에 관한 사항 38. 핵 및 화생방 방어에 관한 사항 39. 민방위 및 비상사태에 관한 사항 40. 충무계획 작성 및 조정통제에 관한 사항 41. 을지연습에 관한 사항 42. 인력동원 실제 훈련에 관한 사항 43. 민방위대원 교육 및 민방위훈련에 관한 사항 44. 민방위 재난 통제에 관한 사항 45. 민방위대 조직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6. 주민신고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 47. 민방위대 교육 강사에 관한 사항 48. 민방위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 49. 공익근무요원관리에 관한 사항 50. 그 밖에 민방위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부서명	분 장 사 무
재난방재과	51. 행정정보통신시스템 종합개발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52. 행정정보통신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3. 행정정보통신시스템(교환기, 인터넷방송시스템, 전광판, 콜센터 등)의 통합 관리에 관한 사항 54. 방송시설 운영 및 행사(방송)지원에 관한 사항 55.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에 관한 사항 56. 정보통신공사 착공 전 설계검토에 관한 사항 57. 정보통신 보안업무에 관한 사항 58. 공공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 감독 업무(신축, 증축, 개축, 보수 등)에 관한 사항(정보통신분야) 59. U-City건설 종합전략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60. Smart 연수 건설(U-City 건설 등)에 관한 사항 61. U-도시통합운영센터 건설에 관한 사항 62.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3. 정보통신망(유선, 무선, 센서망 등)고도화에 관한 사항 64. 인터넷전화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 65. U-Service 개발 및 서비스지원에 관한 사항 66. CCTV설치 종합계획수립 및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별표 2】

직속기관(보건소) 사무분장표 (제11조 관련)

부서명		분 장 사 무
보 건 소	보 건 행 정 과	1. 공인관리 2. 당직근무 및 소내의 복무관리 3.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에 관한 사항 4. 전임계약직 고용에 관한 사항 5. 도시보건지소에 관한 사항 6. 청사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7. 예산운영, 공사도급, 용역, 물품계약에 관한 사항 8.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9. 지역보건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0. 물품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11.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관한 사항 12. 일상경비 교부에 관한 사항 13. 보건소 대강당, 프로그램실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 14.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에 관한 사항 15. 전임계약직,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관한 사항 16. 회계관계 증빙서류 관리에 관한 사항 17. 보건통합정보시스템 관리에 관한 사항 18. 차량 및 전산 관리 19. 민원서류의 접수 통제에 관한 사항 20. 보건사업 통합평가 관리에 관한 사항 21. 각종문서 수발 및 분류에 관한 사항 22. 진단서 및 제증명 발급 23. 일반진료(양·한방, 방사선, 물리치료)에 관한 사항 24. 진료비청구 및 기타 수가의 징수 25. 노인장기요양보험청구에 관한 사항 26. 방사선 검사에 관한 사항(골다공증, X-Ray 등) 27. 한의약공공보건사업에 관한 사항 28. 물리치료사업에 관한 사항

부서명		분 장 사 무
보건소	보건행정과	29. 휠체어 대여사업에 관한 사항 30. 의료법에 의한 개설허가(신고), 신고사항 변경신고처리 및 지도감독 31. 약사법에 의한 개설등록(변경신고)처리 및 지도감독 32. 마약류 관리에 관한 사항 33. 의료기기판매업 신고(변경신고)처리 및 지도감독 34. 안경업소, 치과기공소 신고(변경신고)처리 및 지도감독 35. 안마시술소 개설신고(변경신고)처리 및 지도감독 36. 진단용방사선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37.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 38. 지역보건법에 의한 건강진단 등 신고 처리 및 지도감독 39. 명절연휴 진료대책에 관한 사항 40.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에 관한 사항 41. 구강보건실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42. 치과진료에 관한 사항 43. 노인의치보철사업에 관한 사항 44. 학교구강보건실 운영에 관한 사항 45. 생애주기별 구강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6. 소독업소 신고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 47. 감염병관리대책수립 및 예방 홍보 사업 48. 레지오넬라증 관리에 관한 사항 49. 생물테러 대비 및 대응 대책 수립 50. 에이즈 등 성매개감염병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51. 해외유입감염병 추적조사에 관한 사항(SARS, AI 등) 52. 표본감시의료기관에 관한 사항 53. 방역소독업무에 관한 사항 54. 방역 소독 약품 및 기자재 관리 55. 소독의무대상 시설에 관한 사항 56. 감염병 등 검사에 관한 사항 57. 식중독 검사에 관한 사항 58. 항산화 검사 등에 관한 사항 59. 집단급식시설 보균검사에 관한 사항 60. 결핵 예방 및 치료에 관한 사항 61.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관리에 관한 사항 62. 한센병 관리에 관한 사항

부서명		분 장 사 무
보건소	건강증진과	1. 건강증진사업 계획 및 수립에 관한사항 2. 일상경비 지출 및 공인관리에 관한 사항 3. 예산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일상경비 증빙서류 보관에 관한 사항 5.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고용·관리에 관한 사항 6.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관한 사항 7. 문서수발 및 분류에 관한 사항 8.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항 9. 차량관리에 관한 사항 10. 건강도시에 관한 업무 11. 건강증진서비스분야 ISO9001인증에 관한 사항 12. 건강관리버스 운영에 관한 사항 13. 건강생활실천사업 운영에 관한사항 14. 건강생활실천사업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15. 체력측정실 운영에 관한 사항 16. 체력단련실 및 운동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17. 연수구 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 과태료부과에 관한 사항 18.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9. 금연클리닉 운영에 관한 사항 20. 간접흡연예방에 관한 사항 21. 금연법령이행실태 지도 및 점검에 관한 사항 22. 금연구역지정 관리에 관한 사항 23. 흡연자의 금연지원에 관한 사항 24.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의 과태료부과에 관한 사항 25. 알코올상담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26. 알코올 사회복귀이용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27. 알코올 사회복귀주거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부서명		분 장 사 무
보 건 소	건 강 증 진 과	28. 정신보건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29. 정신건강증진센터 위탁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30. 중증정신질환자 등록관리에 관한 사항 31. 아동청소년 및 지역주민 정신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32. 자살예방관리에 관한 사항 33. 치매보호센터 위탁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34. 치매상담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35. 치매조기검진관리에 관한 사항 36. 치매치료관리비지원에 관한 사항 37. 치매통합관리센터 위탁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38. 임신부 등록관리에 관한 사항 39. 난임부부 관리에 관한 사항 40.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에 관한 사항 41. 임신부 및 ·영유아 교육에 관한 사항 42.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사항 43. 모유수유 장려에 관한 사항 44. 영유아 등록 관리에 관한 사항 45.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등록 관리 및 의료비지원에 관한 사항 46. 산후조리원 신고 처리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47.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에 관한사항 48. 발달장애 정밀 진단비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49. 취학전 아동 실명예방 사업에 관한 사항 50. 선천성대사이상질환 조기발견 및 등록관리에 관한 사항 51. 영양플러스 사업에 관한 사항 52. 신생아 난청조기검진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53. 성교육 및 성상담사업에 관한사항 54.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 인정조사 및 판정에 관한 사항 55. 방문건강관리사업 자원봉사자 활동 관리에 관한 사항

부서명		분 장 사 무
보 건 소	건 강 증 진 과	56. 심·뇌혈관 질환 조기발견사업에 관한 사항 57. 심·뇌혈관 질환 예방·홍보에 관한 사항 58. 고혈압, 당뇨병 예방관리 상설교실 운영에 관한 사항 59. 방문건강관리 대상자 신규등록을 위한 기초조사에 관한 사항 60. 방문보건대상자 보건소 내·외 연계서비스 제공관련 사항 61. 지역사회 건강조사 사업에 관한 사항 62.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외 판정자 관리에 관한 사항 63. 재가암 관리에 관한 사항 64. 국가암조기검진사업에 관한 사항 65.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사업에 관한 사항 66.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67. 암환자의료비지원에 관한 사항 68.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 사업에 관한 사항 69. 영유아 국가필수 예방접종에 관한 사항 70. 성인 B형간염 예방접종에 관한 사항 71.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관한사항 72. 폐렴구균 예방접종에 관한 사항 73. 만 12세 아동 일본뇌염 및 Td 예방접종에 관한 사항 74. 필수예방접종비용 국가부담사업에 관한 사항 75. 의료기관 필수예방접종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76.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에 관한 사항

【별표 3】

사업소 사무 분장표(제13조 관련)

부서명	분 장 사 무
연수 청학도서관	1. 도서관 조성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발전 계획 및 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3. 작은도서관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4. 독서문화진흥 사업에 관한 사항 가. 독서문화 프로그램 및 행사 개발·기획·운영 나. 도서관 견학 및 이용교육 다. 독서대회, 전시회, 강연회 운영 등 5. 타 도서관 교류 및 상호협력에 관한 사항 6. 도서관 홍보에 관한 사항 7. 도서관 장서 및 이용 통계에 관한 사항 8. 도서관 평가와 개선에 관한 사항 9. 도서관 자원봉사자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10. 보조인력 교육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1. 도서관 예산 및 회계 처리에 관한 사항 12. 도서관 업무 관련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3. 시설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14. 시설물 대관에 관한 사항 15. 자료 선정(구입, 기증) 및 수집, 정리에 관한 사항 16. 자료의 제적 및 폐기, 이관에 관한 사항 17. 자료의 수리 및 배가, 장서점검에 관한 사항 18. 자료의 대출 및 반납에 관한 사항 19. 신착·희망·예약·연체·분실 자료관리에 관한 사항

부서명	분 장 사 무
연수 청학도서관	20. 도서 상호대차 및 순회문고 운영에 관한 사항 21. 통합도서서비스 운영에 관한 사항 22. 독서회원 관리에 관한 사항 23. 도서관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 24. 도서관 운영 관련 장비 및 SW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25. 도서관 서버 및 네트워크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26. 도서관 전산 보안에 관한 사항

【별표 4】

하부기관(동 주민센터) 사무분장표 (제15조 관련)

부서명	분 장 사 무
동 주민센터	1. 소속직원의 인사·복무에 관한 사항 2. 직인 및 문서관리에 관한 사항 3. 보안업무 및 비밀문서 관리에 관한 사항 4. 청사관리 및 당직에 관한 사항 5. 통·반 구역확정 및 통·반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 6.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7.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주민등록 및 인감에 관한 사항 9. 민방위대 운영에 관한 사항 10. 제증명신고 사실 확인 및 증명의 경유에 관한 사항 11. 물품의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항 12. 동 재산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3. 법령 기타 공지사항의 공시 및 동민 여론조사 처리에 관한 사항 14. 취학아동 사무에 관한 사항 15. 국민기초생활보장에 관한 사항 16.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아동복지, 한부모 복지에 관한 사항 17. 환경미화원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 18. 가족관계등록부 발급에 관한 사항 19. 어디서나 민원처리제에 관한 사항 20. 각종 시책추진에 관한 사항 21.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22. 그 밖에 구청장으로부터 위임된 사무 및 지시사항

인천광역시연수구규칙(공포)

제 명	주 요 내 용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	□ 개정 이유 ○ 2013년도 총액인건비 증원인력 및 복지전달체계 개선에 따른 복지인력 충원 등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조정하여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을 운용하고자 함 □ 주요 내용 ○ [별표] 기관별·직급별 정원 일부개정 - 정원관리 기관별 조정현황 <table><tr><th>구 분</th><th>계</th><th>본청</th><th>의회</th><th>직속기관</th><th>사업소</th><th>등</th></tr><tr><td>증 감</td><td>22</td><td>17</td><td>-</td><td>1</td><td>0</td><td>4</td></tr><tr><td>현 행</td><td>619</td><td>430</td><td>17</td><td>42</td><td>12</td><td>118</td></tr><tr><td>개 정</td><td>641</td><td>447</td><td>17</td><td>43</td><td>12</td><td>122</td></tr></table> - 직급별 조정현황 <table><tr><th rowspan="2">구 분</th><th rowspan="2">계</th><th rowspan="2">정무직</th><th colspan="7">일 반 직</th><th colspan="5">기 능 직</th></tr><tr><th>소계</th><th>4급 이상</th><th>5급</th><th>6급</th><th>7급</th><th>8급</th><th>9급</th><th>소계</th><th>6급</th><th>7급</th><th>8급</th><th>9급</th></tr><tr><td>증 감</td><td>22</td><td>-</td><td>22</td><td>-</td><td>1</td><td>5</td><td>7</td><td>9</td><td>-</td><td>-</td><td>1</td><td>1</td><td>1</td><td>△3</td></tr><tr><td>현 행</td><td>619</td><td>1</td><td>574</td><td>5</td><td>44</td><td>132</td><td>183</td><td>162</td><td>48</td><td>44</td><td>4</td><td>17</td><td>16</td><td>7</td></tr><tr><td>개 정</td><td>641</td><td>1</td><td>596</td><td>5</td><td>45</td><td>137</td><td>190</td><td>171</td><td>48</td><td>44</td><td>5</td><td>18</td><td>17</td><td>4</td></tr></table>	구 분	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등	증 감	22	17	-	1	0	4	현 행	619	430	17	42	12	118	개 정	641	447	17	43	12	122	구 분	계	정무직	일 반 직							기 능 직					소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소계	6급	7급	8급	9급	증 감	22	-	22	-	1	5	7	9	-	-	1	1	1	△3	현 행	619	1	574	5	44	132	183	162	48	44	4	17	16	7	개 정	641	1	596	5	45	137	190	171	48	44	5	18	17	4
구 분	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등																																																																																															
증 감	22	17	-	1	0	4																																																																																															
현 행	619	430	17	42	12	118																																																																																															
개 정	641	447	17	43	12	122																																																																																															
구 분	계	정무직	일 반 직							기 능 직																																																																																											
			소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소계	6급	7급	8급	9급																																																																																							
증 감	22	-	22	-	1	5	7	9	-	-	1	1	1	△3																																																																																							
현 행	619	1	574	5	44	132	183	162	48	44	4	17	16	7																																																																																							
개 정	641	1	596	5	45	137	190	171	48	44	5	18	17	4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고남석

2013. 2. 28.

인천광역시연수구 규칙 제515호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직렬별 정원 (제2조 관련)

기관별 직렬별	계	구본청	의회사무 기 구	직속기관 (보건소)	사업소 (도서관)	동
합계	641	447	17	43	12	122
정무직	1	1				
일반직	596	409	15	39	12	121
3급	1	1				
행정	1	1				
4급	4	3		1		
행정	2	2				
기술	2	1		1		
5급	45	24	3	5	1	12
행정	26	14	3			9
의무	3			3		
시설	2	2				
행정·사회복지	3	2				1
행정·사서	1				1	
행정·녹지	2	1				1
행정·보건	2	1		1		
행정·환경	2	2				
행정·시설	3	2				1
보건·의료기술· 약무·간호	1			1		
6급	137	102	4	11	3	17
행정	69	50	4		1	14
세무	5	5				
사회복지	3	3				
전산	1	1				
공업	1	1				

기관별 직렬별	계	구본청	의회사무 기 구	직속기관 (보건소)	사업소 (도서관)	동
녹지	2	2				
보건	5	4		1		
간호	2			2		
환경	1	1				
시설	11	11				
의료기술	1			1		
행정·세무	3	3				
행정·사회복지	10	7				3
행정·사서	1				1	
행정·공업	2	2				
행정·보건	2	1		1		
행정·환경	4	4				
행정·시설	4	3			1	
행정·방송통신	1	1				
공업·시설	2	2				
녹지·시설	1	1				
보건·의료기술	1			1		
보건·간호	1			1		
약무·간호	1			1		
보건·의료기술·간호	2			2		
보건·약무·간호	1			1		
7급	190	129	5	15	5	36
행정	83	48	5		3	27
세무	19	19				
사회복지	20	11				9
전산	6	5			1	
사서	1				1	
공업	7	7				
녹지	3	3				

기관별 직렬별	계	구본청	의회사무 기 구	직속기관 (보건소)	사업소 (도서관)	동
보건	8	4		4		
의료기술	4			4		
간호	6			6		
환경	5	5				
시설	20	20				
방송통신	2	2				
행정·세무	1	1				
행정·사회복지	2	2				
행정·환경	2	2				
보건·의료기술·약무	1			1		
8급	171	123	3	7	3	35
행정	86	56	3	1		26
세무	7	7				
사회복지	7	2				5
전산	5	5				
사서	1				1	
공업	9	8			1	
녹지	3	3				
보건	6	3		3		
의료기술	2			2		
간호	1			1		
환경	3	3				
시설	21	21				
방송통신	2	2				
행정·사회복지	10	6				4
행정·사서	1				1	
행정·세무	2	2				
녹지·시설	1	1				
행정·환경	3	3				

기관별 직렬별	계	구본청	의회사무 기 구	직속기관 (보건소)	사업소 (도서관)	동
행정·보건	1	1				
9급	48	27				21
행정	20	7				13
사회복지	10	6				4
전산	1	1				
녹지	1	1				
보건	1	1				
시설	2	2				
환경	1	1				
행정·사회복지	7	3				4
행정·세무	2	2				
행정·보건	2	2				
행정·공업	1	1				
기능직	44	37	2	4		1
6급	5	5				
운전	2	2				
기계	1	1				
조무·사무	2	2				
7급	18	17	1			
운전	7	6	1			
전기	1	1				
기계	2	2				
조무·사무	6	6				
사무	2	2				
8급	17	13	1	2		1
운전	7	5		2		
방호	1	1				
기계	1	1				
사무	7	5	1			1
조무	1	1				
9급	4	2		2		
운전	3	1		2		
조무	1	1				

인천광역시연수규칙(공포)

제 명	주 요 내 용
인천광역시연수구 청원경찰징계규칙 일부개정규칙	☐ 개정 이유 ○ 공무원 신분이 아님에도 직무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복무상 공무원에 준하는 여러 가지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청원경찰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하여 청원경찰의 징계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한 취지에 맞추어 본 규칙을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기 위함. ☐ 주요 내용 ○ 징계처분의 근거 조항인 「청원경찰법시행령」 제17조제3항을 「청원경찰법」 제5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로 변경 ○ 징계의 종류와 기간, 봉급감액 근거(비율)를 개정함

인천광역시연수구청원경찰징계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고남석

2013. 2. 28.

인천광역시연수구 규칙 제516호

인천광역시연수구청원경찰징계규칙 일부개정규칙

인천광역시연수구청원경찰징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청원경찰법시행령 제17조 제3항”을 “「청원경찰법」 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징계의 종류) ① 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한다.

②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하고, 그 기간에 청원경찰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줄인다.

③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하고, 보수의 3분의 1을 줄인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연수구훈령(발령)

제 명	주 요 내 용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정원 규정 일부개정규정	☐ 개정이유 ○ 2013년도 총액인건비 산정 결과에 따른 증원 인력 및 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시행지침에 의거 사회복지직렬 공무원의 정원을 증원하고, 급속한 행정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창의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조직개편을 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 내용 ○ 부서별 직급별·직렬별 정원조정 - 구분청 부서별 정원 조정 (별표 1) - 직속기관에 두는 정원 조정 (별표3) - 사업소에 두는 정원 조정 (별표4) - 동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 조정 (별표 5)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정원규정 일부개정규정을 이에 발령한다.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고남석

2013. 2. 28.

인천광역시연수구 훈령 제242호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정원규정 일부개정규정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정원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부터 별표 5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구 본청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제2조제1항 관련)

부 서	직 종	직 급	정 원	직 렬
합 계			447	
기획예산실	계		17	
	일반직	소계	17	
		5급	1	행정1
		6급	6	행정6
		7급	7	행정6, 시설1
		8급	3	행정2, 전산1
		9급	-	
감사실	계		9	
	일반직	소계	9	
		5급	1	행정1(개방1)
		6급	5	행정4, 행정·시설1
		7급	2	행정2
		8급		
		9급	1	행정1
홍보미디어실	계		14	
	일반직	소계	12	
		5급	1	행정1
		6급	3	행정2, 전산1
		7급	5	행정1, 전산4
		8급	2	행정1, 전산1
		9급	1	전산1
	기능직	소계	2	
		7급	1	사무1
		8급	1	사무1
		9급		

부서명	직종	직급	정원	직 렬
총 무 과	계		24	
	정무직		1	구청장1
	일반직	소계	20	
		3급	1	행정1
		4급	1	행정1
		5급	1	행정1
		6급	5	행정5
		7급	6	행정6
		8급	6	행정6
		9급		
	기능직	소계	3	
		6급	1	운전1
		7급	1	조무·사무1
		8급	1	운전1
		9급		
교 육 지 원 과	계		11	
	일반직	소계	11	
		5급	1	행정1
		6급	3	행정3
		7급	3	행정3
		8급	4	행정4(전임계약직1 포함)
		9급		
	기능직	소계	-	
		7급		
		8급		
		9급		
문 화 체 육 과	계		13	
	일반직	소계	12	
		5급	1	행정1
		6급	4	행정4
		7급	4	행정4
		8급	3	행정3
		9급		
	기능직	소계	1	
		7급	1	운전1

부서명	직종	직급	정원	직 렬
재 무 회 계 과	계		21	
	일반직	소계	16	
		5급	1	행정1
		6급	4	행정3, 시설·공업1
		7급	9	행정3, 공업1, 전산1, 시설4
		8급	2	행정1, 공업1
		9급	-	
	기능직	소계	5	
		6급	1	운전1
		7급	3	조무·사무1, 운전2
		8급	1	운전1
세 무 과	계		41	
	일반직	소계	41	
		5급	1	행정1
		6급	8	세무5, 행정·세무3
		7급	17	세무17
		8급	13	행정3, 전산1, 세무7, 행정·세무2
		9급	2	행정·세무2
	기능직	소계		
		8급		
		9급		
민 원 지 적 과	계		32	
	일반직	소계	30	
		5급	1	행정·시설1
		6급	6	행정4, 시설1, 행정·시설1
		7급	9	행정5(전임계약직1명포함), 시설4
		8급	13	행정8, 시설4, 전산1
		9급	1	행정1
	기능직	소계	2	
		7급		
		8급	2	운전1, 조무1

부서명	직종	직급	정원	직 렬
복지정책과	계		30	
	일반직	소계	28	
		4급	1	행정1
		5급	1	행정1
		6급	6	행정1, 사회복지3, 행정·사회복지2
		7급	10	행정4, 사회복지6
		8급	7	행정2, 사회복지2 행정·사회복지3
		9급	3	사회복지2 행정·사회복지1
	기능직	소계	2	
		7급	2	사무1, 운전1
사회복지과	계		19	
	일반직	소계	18	
		5급	1	행정·사회복지1
		6급	4	행정3, 행정·사회복지1
		7급	5	행정1, 사회복지3, 행정·사회복지1
		8급	4	행정3, 행정·사회복지1
		9급	4	사회복지3, 행정·사회복지1
	기능직	소계	1	
		6급	1	조무·사무1
가정복지과	계		19	
	일반직	소계	18	
		5급	1	행정·사회복지1
		6급	4	행정·사회복지4
		7급	5	행정2, 사회복지2, 행정·사회복지1
		8급	6	행정3 행정·사회복지2, 보건1
		9급	2	사회복지1 행정·사회복지1
	기능직	소계	1	
		7급	1	조무·사무1

부서명	직종	직급	정원	직 렬
지역경제과	계		11	
	일반직	소계	11	
		5급	1	행정1
		6급	3	행정2, 공업1
		7급	3	행정1, 공업2
		8급	3	행정1, 공업2
		9급	1	행정·공업1
일자리창출과	계		8	
	일반직	소계	8	
		5급	1	행정1
		6급	3	행정3
		7급	2	행정2
		8급	2	행정2
		9급		
청 소 행 정 과	계		14	
	일반직	소계	12	
		5급	1	행정·환경1
		6급	3	행정2, 행정·환경1
		7급	5	행정2, 환경2, 행정·환경1
		8급	2	행정1, 환경1
		9급	1	행정1
	기능직	소계	2	
		6급	1	조무·사무1
		7급	1	운전1

부서명	직종	직급	정원	직 렬
위생관리과	계		16	
	일반직	소계	16	
		5급	1	행정·보건1
		6급	5	보건4, 행정·보건1
		7급	4	보건4
		8급	3	보건2, 행정·보건1
		9급	3	보건1, 행정·보건2
건설과	계		29	
	일반직	소계	23	
		4급	1	기술1
		5급	1	시설1
		6급	6	행정2, 시설3, 시설·공업1
		7급	6	행정1, 시설4, 공업1
		8급	8	행정1, 시설5, 공업2
		9급	1	행정1
	기능직	소계	6	
		6급	1	기계1
		7급	3	운전1, 기계1, 전기1
		8급	1	기계1
		9급	1	운전1
건축과	계		18	
	일반직	소계	15	
		5급	1	시설1
		6급	4	행정·시설1, 시설3
		7급	3	시설3
		8급	5	시설5
		9급	2	시설2
	기능직	소계	3	
		7급	2	기계1, 조무·사무1
		8급	1	사무1

부서명	직종	직급	정원	직렬
도시계획과	계		14	
	일반직	소계	13	
		5급	1	행정·시설1
		6급	3	행정1, 시설2
		7급	4	행정1, 시설2, 공업1
		8급	5	행정1, 시설4
		9급		
	기능직	소계	1	
		8급	1	사무1
환경보전과	계		21	
	일반직	소계	20	
		5급	1	행정·환경1
		6급	5	환경1, 행정·환경3, 행정·공업1
		7급	4	환경3, 행정·환경1
		8급	7	행정2, 환경2, 행정·환경3
		9급	3	행정2, 환경1
	기능직	소계	1	
		8급	1	사무1
공원녹지과	계		18	
	일반직	소계	16	
		5급	1	행정·녹지1
		6급	3	녹지2, 시설·녹지1
		7급	4	녹지3, 공업1
		8급	7	행정2, 녹지3 시설·녹지1, 공업1
		9급	1	녹지1
	기능직	소계	2	
		8급	2	운전1, 방호1

부서명	직종	직급	정원	직 렬
교통행정과	계		14	
	일반직	소계	14	
		5급	1	행정1
		6급	3	행정1, 시설1, 행정·공업1
		7급	2	행정2
		8급	7	행정4, 공업1, 시설2
		9급	1	행정1
차량민원과	계		19	
	일반직	소계	14	
		5급	1	행정1
		6급	3	행정3
		7급	4	행정1, 세무2, 행정·세무1
		8급	6	행정6
		9급		
	기능직	소계	5	
		7급	2	조무·사무2
		8급	2	운전1, 사무1
		9급	1	조무1
재난방재과	계		15	
	일반직	소계	15	
		5급	1	행정1
		6급	3	행정1, 시설1, 행정·방송통신1
		7급	6	행정1, 공업1, 시설2 방송통신 2
		8급	5	전산1, 공업1, 시설1 방송통신2
		9급		

[별표 2]

의회사무기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제2조제2항 관련)

부 서	직 종	직 급	정 원	직 렬
의 회		계	17	
	일반직	소계	15	
		5 급	3	행정3
		6 급	4	행정4
		7 급	5	행정5
		8급	3	행정3
	기능직	소계	2	
		7 급	1	운전1
		8 급	1	사무1

[별표 3]

직속기관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 (제2조제3항 관련)

부서명	직종	직급	정원	직렬
보건소			43	
보건행정과	계		27	
	일반직	소계	24	
		4급	1	기술1
		5급	4	의무3, 행정·보건1
		6급	5	행정·보건1, 의료기술 1(전임계약직), 보건·약무·간호1, 보건·간호·의료기술2
		7급	10	보건3 보건·약무·의료기술1, 의료기술4 간호2
		8급	4	행정1, 보건1, 의료기술2
	기능직	소계	3	
		8급	2	운전2
		9급	1	운전1
건강증진과	계		16	
	일반직	소계	15	
		5급	1	보건·간호·약무·의료기술1
		6급	6	보건1, 간호2, 보건·의료기술1, 약무·간호1, 보건·간호1
		7급	5	간호4 보건1
		8급	3	보건2, 간호1
	기능직	소계	1	
		9급	1	운전1

[별표 4]

사업소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제2조제4항 관련)

구분	직종	직급	정원	직 렬
도 서 관	계		12	
	일반직	소계	12	
		5급	1	행정·사서1
		6급	3	행정·사서1, 행정·시설1, 행정1
		7급	5	행정3, 전산1, 사서1,
		8급	3	사서1, 공업1, 행정·사서1
		9급		

[별표 5]

동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제2조제5항 관련)

동 명	직종	직급	정원	직렬
합계			122	
옥련 1 동	계		10	
	일반직	소계	9	
		5급	1	행정·시설1
		6급	1	행정1
		7급	3	행정2, 사회복지1
		8급	3	행정2, 사회복지1
		9급	1	행정1
	기능직	소계	1	
		8급	1	사무1
옥련 2 동	계		10	
	일반직	소계	10	
		5급	1	행정1
		6급	1	행정1
		7급	3	행정2, 사회복지1
		8급	4	행정3, 사회복지1
		9급	1	행정1
선학 동	계		12	
	일반직	소계	12	
		5급	1	행정1
		6급	2	행정1 행정·사회복지1
		7급	3	행정2, 사회복지1
		8급	3	행정3
		9급	3	행정1, 사회복지1, 행정·사회복지1
연수 1 동	계		11	
	일반직	소계	11	
		5급	1	행정1
		6급	2	행정2
		7급	5	행정3, 사회복지2
		8급	2	행정2
		9급	1	행정1

동 명	직종	직급	정원	직렬
연수 2 동	계		12	
	일반직	소계	12	
		5급	1	행정1
		6급	2	행정1 행정·사회복지1
		7급	4	행정3, 사회복지1
		8급	2	행정2
		9급	3	행정1, 사회복지1 행정·사회복지1
연수 3 동	계		11	
	일반직	소계	11	
		5급	1	행정·사회복지1
		6급	2	행정1 행정·사회복지1
		7급	3	행정2, 사회복지1
		8급	2	행정2
		9급	3	행정1, 사회복지1 행정·사회복지1
청 학 동	계		13	
	일반직	소계	13	
		5급	1	행정·녹지1
		6급	1	행정1
		7급	4	행정3, 사회복지1
		8급	4	행정2, 행정·사회복지2
		9급	3	행정2, 행정·사회복지1
동춘 1 동	계		9	
	일반직	소계	9	
		5급	1	행정1
		6급	1	행정1
		7급	3	행정2, 사회복지1
		8급	4	행정3, 행정·사회복지1
		9급		

동 명	직종	직급	정원	직 렬
동춘 2 동	계		8	
	일반직	소계	8	
		5급	1	행정1
		6급	1	행정1
		7급	2	행정2
		8급	3	행정2, 행정·사회복지1
		9급	1	행정1
동춘 3 동	계		8	
	일반직	소계	8	
		5급	1	행정1
		6급	1	행정1
		7급	2	행정2
		8급	3	행정2, 사회복지1
		9급	1	행정1
송도 1 동	계		10	
	일반직	소계	10	
		5급	1	행정1
		6급	2	행정2
		7급	2	행정2
		8급	3	행정2, 사회복지1
		9급	2	행정1, 사회복지1
송도 2 동	계		8	
	일반직	소계	8	
		5급	1	행정1
		6급	1	행정1
		7급	2	행정2
		8급	2	행정1, 사회복지1
		9급	2	행정2

인천광역시연수구훈령(발령)

제 명	주 요 내 용
인천광역시연수구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	☐ 개정이유 ○ 급속한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모든 구성원이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는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해 조직개편 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 내용 ○ 부서명칭 변경 - 정보통신과 ⇒ 홍보미디어실 - 건설방재과 ⇒ 건설과 ○ 사무분장 변경에 따른 부서별·직종별 이관 - 자립지원직업상담사(일자리창출과 ⇒ 사회복지과) - 아암도 시설물·장비유지관리인부 (건설방재과 ⇒ 공원녹지과) ○ 환경보전과 도시국 이관에 따른 직제 변경

인천광역시연수구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이에
발령한다.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고남석

2013. 2. 28.

인천광역시연수구 훈령 제243호

인천광역시연수구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

인천광역시연수구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무기계약 근로자의 정수표

1. 총괄

구 분	총 계	행정보조원	단순노무원	도로보수원	환경미화원	청원경찰
무기계약직	124	10	12	6	77	19

2. 부서별·직종별 현황

부 서 별	계	행 정 보 조 원									단 순 노 무 원					도 로 보수원	환 경 미화원	청원 경찰
		소계	국공유 재산관리	의료급여 사례관리	보육상담 실상담원	자립지원 직업상담사	GIS DB 입력원	사서 보조	도시시스 템운영	보건행정 보조원	소계	시설물·장비유지 관리부	현장공사작업등 현업인부	현장지도단속· 감시 현장인부	단순잡역 조무인부			
총 계	124	10	1	1	1	1	1	1	1	3	12	4	1	4	3	6	77	19
본 청	117	5	1	1	1	1	1				10	4	1	4	1	6	77	19
홍보미디어실	1										1				1			
총 무 과	19																	19
재무회계과	1	1	1															
사회복지과	2	2		1		1												
가정복지과	1	1			1													
청소행정과	77																77	
건 설 과	8	1					1				1		1			6		
도시계획과	4										4			4				
환경보건과	1										1	1						
공원녹지과	3										3	3						
직 속 기 관	5	3								3	2				2			
보 건 소	5	3								3	2				2			
사 업 소	2	2						1	1									
연수청학도서관	2	2						1	1									

인천광역시연수구예규(발령)

제 명	주 요 내 용
인천광역시연수구 징계양정에관한규칙 시행지침 폐지지침	☐ 폐지 이유 ○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의 일부개정(규칙 제499호 2012.07.09)에 따라 감독문책 운영절차, 징계의결 요구권자의 의견기재요령 등 지침의 대부분이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과 중복되어 실효성이 없으므로 폐지하고자 함 ☐ 주요 내용 ○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징계양정에관한규칙시행지침은 폐지함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징계양정에관한규칙시행지침 폐지지침을 이에 발령한다.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고남석

2013. 2. 28.

인천광역시연수구 예규 제70호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징계양정에관한규칙시행지침 폐지지침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징계양정에관한규칙시행지침은 폐지한다.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송학동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 변경인가 고시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118-1번지 일대 송학동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 변경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 2. 28.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 사업시행인가 내용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송학동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2.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118-1 외 1필지
 - 구역면적 : 6,809m²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송학동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정영린
 - 주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118-8
4.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48개월
5. 사업시행변경인가일 : 2013년 2월 28일

6. 건축물의 대지면적·건폐율·용적율·높이·용도 등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

구역명	대지면적(m ²)	건축면적(m ²)	건축연면적(m ²)	건폐율(%)	비고
송학동지 아파트	6,809	1,455.69	23,769.88	21.38	
	용적율(%)	높이(m)	층수	용도	
	249.83	61.8	-2/21	공동주택 (아파트)	

7. 주택의 규모 등 주택건설계획

유 형 별	세대수	전용면적 (m ²)	주거공용면적 (m ²)	공급면적 (m ²)	비고
59.52A형	112	59.52	19.5128	79.0328	분양
59.52B형	100	59.52	18.4028	77.9228	분양
합계	212				

8. 변경의 사유 및 내용

가. 변경의 사유

: 세대수 증가, 단위세대 일부변경, 사업비 변경

나. 주요 변경내용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건축면적	1,449.36m ²	1,455.69m ²	증) 6.33m ²
연면적	23,125.14m ²	23,769.88m ²	증) 644.74m ²
건폐율	21.29%	21.38%	증) 0.09%
용적률	240.16%	249.83%	증) 9.67%
층수	19층/20층/18층	20층/21층/19층	증) 1개층
세대수	206세대	212세대	증) 6세대
사업비	30,913,071,690원	30,977,570,133원	증) 64,498,443원

공인 등록 및 폐기 공고

연수구 공인조례 제 9조의 규정에 의거 공인의 등록 및 폐기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13. 2. 25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1. 등록 및 폐기 공인 :
 - 등록공인 : 인천광역시연수구기획예산실일상경비출납원인 등 22개
 - 폐기공인 : 인천광역시연수구기획감사실일상경비출납원인 등 25개
2. 공인 신조등록 및 폐기 인영 명부 : 붙임
3. 신규제작공인 사용개시일 : 2013년 3월 1일
4. 폐기공인 기준일 : 2013. 2. 28

□ 신규 제작공인 목록

공인명	인영규격	인영	수량	비고
인천광역시연수구 기획예산실 일상경비출납원인	1.8cm		/	
인천광역시연수구 기획예산실 분임물품출납원인	1.8cm		/	
인천광역시연수구 기획예산실분임 경리관인	2.0cm		/	
인천광역시연수구 감사실 일상경비출납원인	1.8cm		/	
인천광역시연수구 감사실 분임물품출납원인	1.8cm		/	
인천광역시연수구 감사실분임 경리관인	2.0cm		/	
인천광역시연수구 홍보미디어실 일상경비출납원인	1.8cm		/	
인천광역시연수구 홍보미디어실 분임물품출납원인	1.8cm		/	
인천광역시연수구 홍보미디어실 분임경리관인	2.0cm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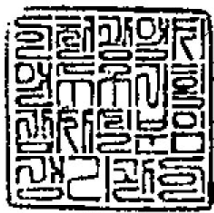
공인명	인영규격	인영	수량	비고
인천광역시연수구 복지정책과 일상경비출납원인	1.8cm		/	
인천광역시연수구 복지정책과 분임물품출납원인	1.8cm		/	
인천광역시연수구 복지정책과 분임징수관인	2.0cm		/	
인천광역시연수구 복지정책과 분임경리관인	2.0cm		/	
인천광역시연수구 건설과 일상경비출납원인	1.8cm		/	
인천광역시연수구 건설과 분임경리관인	1.8cm		/	
인천광역시연수구 건설과 분임물품출납원인	1.8cm		/	
인천광역시연수구 재난방재과 일상경비출납원인	1.8cm		/	
인천광역시연수구 재난방재과 분임물품출납원인	1.8cm		/	
인천광역시연수구 재난방재과 분임경리관인	2.0cm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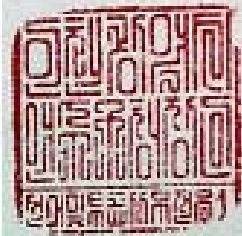
공인명	인영규격	인영	수량	비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인 선거및투표 사무전용1	2.4cm		/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인 선거및투표 사무전용2	2.4cm		/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인 선거및투표 사무전용3	2.4cm		/	
		이하여백		

공인명	인영규격	인영	수량	비고
분임경리관	2cm X 2cm		1	폐기
분임물품출납원	1.8cm X 1.8cm		1	폐기
일상경비출납원	1.8cm X 1.8cm		1	폐기

□ 폐기 및 신규제작 공인(최종)

[기획감사실]

공인명	인영규격	인영	수량	비고
인천광역시 연수구기획감사실 일상경비출납원인	1.8cm×1.8cm		1	폐기
인천광역시 연수구기획감사실 분임물품출납원인	1.8cm×1.8cm		1	폐기
인천광역시 연수구기획감사실 분임경리관인	2.0cm×2.0cm		1	폐기

공 인 명	인영규격	인 영	수 량	비 고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선거및투표사무전용1	2.4cm		1	신규 (기존인영 동일)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선거및투표사무전용2	2.4cm		1	신규 (기존인영 동일)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선거및투표사무전용3	2.4cm		1	신규 (기존인영 동일)

* 폐기 대상 공인

공인명	인영규격(cm)	인영	수량(개)	비고
인천광역시연수구 미술장식품심의위원회 위원장인	3.5 × 3.5		1	폐기

□ 폐기 인영 목록

공 인 명	인영규격	인영	수량	비고
인천광역시연수구 정보통신과 분임경리관인	2.0x2.0		1	폐기
인천광역시연수구 정보통신과일상경비 출납원인	1.8x1.8		1	//
인천광역시연수구 정보통신과분임물품 출납원인	1.8x1.8		1	//

공인명	인영규격	인 영	수 량	비 고
인천광역시연수구청 장세무과민원전용	2.4 * 2.4		1	
인천광역시연수구과 세전직부심사위원회 위원장	3.6 * 3.6		1	
인천광역시연수구과 세표준심의위원회위 원장	3.6 * 3.6		1	
인천광역시연수구청 장세무과민원전용1	2.4 * 2.4		1	

◎ 폐기 인영

공인명	인영규격	인영	수량	비고
인천광역시연 수구주민생활 지원과분임경 리관인	2cm~2cm		1	폐기
인천광역시연 수구주민생활 지원과일상경 비출납원인	1.8cm~1.8cm		1	폐기
인천광역시연 수구주민생활 지원과분임물 품출납원인	1.8cm~1.8cm		1	폐기
인천광역시연 수구주민생활 지원과분임징 수관인	2cm~2cm		1	폐기

건설방재과

공인명	인영규격	인영	수량	비고
인천광역시연수구건설방재과 분임경리관인	2.0cm		1	폐기
인천광역시연수구건설방재과 일상경비출납원인	1.8cm		1	폐기
인천광역시연수구건설방재과 분임물품출납원인	1.8cm		1	폐기

공 인 명	인영규격	인 영	수 량	비 고
인천광역시연수 구청장의인 동춘2동장전용	2.5 × 2.5		1	폐기